

2025회계연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결산  
검 토 보 고 서

|   |   |   |   |
|---|---|---|---|
| 일 | 반 | 회 | 계 |
| 방 | 송 | 통 | 신 |
| 발 | 전 | 기 | 금 |

2026. 9.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이 지 민



# 목 차

|                                      |    |
|--------------------------------------|----|
| I . 2025회계연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 ... | 1  |
| 1. 총 괄 .....                         | 1  |
| (1) 2025회계연도 결산 개요 .....             | 1  |
| (2) 2025회계연도 재정운용 성과 .....           | 3  |
| 2. 일반회계 .....                        | 5  |
| (1) 세입 결산 .....                      | 5  |
| (2) 세출 결산 .....                      | 6  |
| 3. 방송통신발전기금 .....                    | 10 |
| (1) 일반 현황 .....                      | 10 |
| (2) 자금 조달 .....                      | 12 |
| (3) 자금 운용 .....                      | 15 |
| (4)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               | 18 |
| (5) 재무 상태 .....                      | 19 |

## II. 검토의견 ..... 20

### 1. 기획조정관 소관 ..... 20

#### 【일반회계】 ..... 20

##### (1) 법정위원회 운영(7131-304) ..... 2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20

나)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조속한 구성·운영 필요 ..... 22

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고유의 업무범위 구체화 필요 ..... 25

#### 【방송통신발전기금】 ..... 30

##### (2)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3135-301) ..... 3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30

나) 특정 기관·연구자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편중 부적절 ..... 31

다) 학술행사 관련 성과지표 부재 ..... 34

##### (3)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3135-302) ..... 3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37

나) 유사 내역사업 간 통폐합 통한 사업구조 단순화 필요 ..... 38

다) 출연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시정 방안 모색 필요 ..... 42

### 2. 방송정책국 소관 ..... 47

#### 【일반회계】 ..... 47

##### (4) 공익채널 운영실적 모니터링 및 평가(7131-303) ..... 4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47

나) 법령상 근거 없는 민간위탁 부적절 ..... 48

|                                          |    |
|------------------------------------------|----|
| <b>【방송통신발전기금】</b> .....                  | 52 |
| (5) 재난방송 운영지원(3135-307) .....            | 52 |
|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 52 |
| 나)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운영사업의 민간보조사업 추진 부적절 .....  | 53 |
| <br>3.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소관 .....               | 57 |
| <b>【일반회계】</b> .....                      | 57 |
| (6)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2141-301) .....      | 57 |
|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 57 |
| 나) 성과지표 측정 방식 개선 필요 .....                | 58 |
| <b>【방송통신발전기금】</b> .....                  | 62 |
| (7)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3251-304) ..... | 62 |
|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 62 |
| 나) 새로운 성과지표 개발 필요 .....                  | 63 |
| <br>4. 시장조사심의관 소관 .....                  | 66 |
| <b>【방송통신발전기금】</b> .....                  | 66 |
| (8)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2141-302) .....          | 66 |
|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 66 |
| 나) 보조금을 방미통위 자체 사무에 활용하는 행위 시정 .....     | 68 |
| 다) 유사한 주제의 실태조사 중복 수행 지양 .....           | 73 |

|                                             |     |
|---------------------------------------------|-----|
| 5. 방송미디어진흥국 소관 .....                        | 76  |
| <b>【방송통신발전기금】</b> .....                     | 76  |
| (9) 디지털콘텐츠 코리아 펀드(1131-308) .....           | 76  |
|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 76  |
| 나) 정책목적 달성 위하여 사업관리 철저 필요 .....             | 77  |
| (10) 디지털미디어산업 육성기반 구축(정보화)(1140-301) .....  | 85  |
|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 84  |
| 나) 사업목적 및 내용에 부합하도록 사업명 변경 필요 .....         | 85  |
| (11)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조성(정보화)(2431-302) ..... | 88  |
|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 88  |
| 나) 유사 사업과의 통폐합 및 일반회계로 이관 필요 .....          | 89  |
| 6. 방송기반국 소관 .....                           | 95  |
| <b>【방송통신발전기금】</b> .....                     | 95  |
| (12) 미디어다양성 증진(3132-301) .....              | 95  |
|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 95  |
| 나) 국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연구용역 추진 부적절 .....          | 96  |
| (13) 언론중재위원회 지원(3132-309) .....             | 100 |
|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 100 |
| 나) 위원장 월정수당 이중지급 및 특정 부서 전용 수당제도 부적절 .....  | 102 |
| 다) 중재위원 결격사유 확대를 통한 중립성 확대 필요 .....         | 111 |
| 라) 임기제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위원직무수당 연례적 불용 .....      | 114 |
| 마) 기관 성과와 성과지표 간 연계성 저조 .....               | 117 |
| 바) 예산 지원기관과 사업 감독기관의 불일치 문제 .....           | 120 |

# I. 2025회계연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

## 1. 총괄

### (1) 2025회계연도 결산 개요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구성됨.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sup>1)</sup>에 따라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관리함.
- 먼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의 경우 수납액<sup>2)</sup>은 총 8,218억원으로, 예산(계획) 9,114억원 대비 90.2% 수납되었음. 수납액 중 일반회계는 38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은 8,180억원임.

### < 세입 및 수입 결산 총괄(2025) >

(단위: 백만원)

| 구분         | 예산액*<br>(계획액)<br>(A) | 징수<br>결정액<br>(B) | 수납액<br>(C) | 불<br>납<br>결손액 | 미수<br>납액 | 예산대비<br>수납률<br>(C/A) | 징수결정액<br>대비수납률<br>(C/B) |
|------------|----------------------|------------------|------------|---------------|----------|----------------------|-------------------------|
| 총수입        | 911,401              | 902,778          | 821,817    | 1,313         | 79,649   | 90.2                 | 90.0                    |
| - 일반회계     | 30,951               | 81,191           | 3,840      | 1,313         | 76,038   | 12.4                 | 4.7                     |
| - 방송통신발전기금 | 880,450              | 821,587          | 817,977    | -             | 3,611    | 92.9                 | 99.6                    |

\* 예산액 : 2025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 반영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방송통신발전기금 수납액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관리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총액을 의미함.

○ 한편, 일반회계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합한 총 재정지출 규모는 2,682억원으로, 예산현액(지출계획현액) 2,702억원 대비 99.2% 집행되었음. 집행액 중 일반회계는 505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은 2,198억원임.

### < 세출 및 지출 결산 총괄(2025)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예산액<br>(지출계획액) | 예산현액<br>(지출계획현액)<br>(A) | 집행액<br>(B) | 다음연도<br>이월액 | 불용액   | 집행률<br>(B/A) |
|------------|----------------|-------------------------|------------|-------------|-------|--------------|
| 총 지 출      | 267,929        | 270,238                 | 268,156    | 151         | 1,931 | 99.2         |
| - 일 반 회 계  | 48,738         | 50,457                  | 49,470     | 151         | 836   | 98.0         |
| - 방송통신발전기금 | 219,191        | 219,781                 | 218,686    | -           | 1,095 | 99.5         |

주: 방송통신발전기금 집행액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 정부내부거래, 여유자금운용 제외)임.

## (2) 2025회계연도 재정운용 성과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5회계연도에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통신 정책 조성을 위해서 안전한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위치정보 사업 모델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한 위치정보 사업화를 지원하며, 안전한 AI 활용기반 조성 및 불법스팸·불법유해정보 차단 등을 통해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재원을 배분하였음.
- 또한, 국민이 행복한 이용자 정책 조성을 위해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맞춤형 TV 보급 확대를 통해 소외계층의 시청 편의성을 제고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방송 광고 제작을 지원하며,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및 방송정보 가치정보 분석 등을 실시하여 미디어 다양성을 제고하는 데 재원을 배분하였음.
- 2025회계연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성과목표 5개 중 5개 모두 달성하였음.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하는 공익적 방송 프로그램 만족도가 성과목표 대비 100.5% 달성하였으며, 방송산업 발전을 통해 시청자 복지 추구를 목표로 하는 미디어환경 개선 및 복지 제고 기여도는 성과목표 대비 101.1%로 목표를 달성하였음

# <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현황(2025) >

(단위: 억원, %)

| 구 분                                  | 예산액   | 예산<br>현액 | 결산액   | 집행률<br>(현액대비) | 성과목표<br>달성여부 |
|--------------------------------------|-------|----------|-------|---------------|--------------|
| 전략목표 I : 국민에게 신뢰받는<br>방송통신 정책을 조성한다. | 1,214 | 1,214    | 1,213 | 98.4          | -            |
| · 방송의 공적 책임을<br>강화한다.(I-1)           | 919   | 919      | 918   | 99.9          | ○            |
| · 방송통신 이용자 주권을<br>강화한다.(I-2)         | 295   | 295      | 295   | 99.9          | ○            |
| 전략목표 II : 국민이 행복한<br>이용자 정책을 조성한다.   | 880   | 887      | 876   | 99.3          | -            |
| · 방송산업 발전을 통해 시청자<br>복지를 추구한다.(II-1) | 840   | 840      | 830   | 98.8          | ○            |
| · 방송통신 정책의 성과를<br>극대화한다.(II-2)       | 40    | 40       | 39    | 97.5          | ○            |
| · 콘텐츠 방송산업 육성을<br>촉진한다.(II-2)        | -     | 7        | 7     | 100           | ○            |
| 계                                    | 2,094 | 2,101    | 2,089 | 98.6          | -            |

주: 성과관리대상 사업은 비대상 사업인 인건비, 기본경비가 제외되므로 총 재정지출(예산 2,702억원)보다 규모가 작음.

자료: 2025회계연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 2. 일반회계

### (1) 세입 결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09억 5,100만원, 징수결정액은 811억 9,100만원임. 수납액은 38억 4,100만원으로 예산 대비 12.4%, 징수결정액 대비 4.7%임.

#### < 일반회계 세입 결산(2025) >

(단위: 백만원)

| 세입과목           |                          | 예산<br>(A) | 징수<br>결정<br>(B) | 수납<br>(C) | 미수납    | 예산<br>대비<br>수납률<br>(C/A) | 징수<br>결정<br>대비<br>수납률<br>(C/B) |
|----------------|--------------------------|-----------|-----------------|-----------|--------|--------------------------|--------------------------------|
| 관              | 항                        |           |                 |           |        |                          |                                |
| 재산수입           | 기타이자수입 및<br>재산수입         | 49        | 198             | 188       | 10     | 383.7                    | 94.9                           |
| 경 상<br>이전수입    | 벌금, 몰수금 및<br>과태료         | 29,668    | 51,025          | 2,854     | 47,359 | 9.6                      | 5.6                            |
|                | 가산금                      | 180       | 29,250          | 178       | 28,569 | 98.9                     | 0.6                            |
|                | 기타경상이전수입<br>(사업비 집행잔액 등) | 979       | 553             | 456       | 99     | 46.6                     | 82.5                           |
| 재화 및<br>용역판매수입 | 면허료 및 수수료                | 74        | 165             | 165       | -      | 100.0                    | 100.0                          |
|                | 잡수입                      | 1         | -               | -         | -      | -                        | -                              |
| 합 계            |                          | 30,951    | 81,191          | 3,841     | 76,038 | 12.4                     | 4.7                            |

## (2) 세출 결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04억 5,700만원 대비 98.0%인 494억 7,0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5,1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8억 3,600만원은 불용되었음.
-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콘텐츠방송산업육성’은 예산현액 7억 1,600만원 중 7억 1,600만원(100.0%)을,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은 예산현액 153억 6,000만원 중 152억 4,300만원(99.2%)을, ‘방송통신 행정지원’은 예산현액 337억 4,500만원 중 328억 7,900만원(97.4%)을 ‘방송미디어통신 행정지원’은 예산현액 6억 3,600만원 중 6억 3,200만원(99.4%)을 집행하였음.
- ‘콘텐츠방송산업육성’은 AI·디지털 기반의 제작환경을 확대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며,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은 통신시장의 공정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을 조성하며 KBS 및 EBS의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방송통신 행정지원’과 ‘방송미디어통신 행정지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운영비 성격임.

## ＜ 일반회계 세출 결산(2025) ＞

(단위: 백만원, % / □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구 분                     | 2025   |        |        |      |      | 2026   |
|-------------------------|--------|--------|--------|------|------|--------|
|                         | 예산     | 예산현액*  | 집행     | 불용** | 집행률  | 예산     |
| 합계                      | 48,738 | 50,457 | 49,470 | 987  | 98.0 | 72,968 |
| □ 콘텐츠방송산업육성             | -      | 716    | 716    | -    | 100  | 17,924 |
| ○ 콘텐츠 진흥                | -      | 716    | 716    | -    | 100  | 17,924 |
| -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 -      | 416    | 416    | -    | 100  | 4,157  |
| - 프로그래머블 미디어핵심기술개발(R&D) | -      | 300    | 300    | -    | 100  | 4,000  |
| - 디지털미디어이노베이션기술개발(R&D)  | -      | -      | -      | -    | -    | 9,767  |
| □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    | 15,360 | 15,360 | 15,243 | 117  | 99.2 | 14,643 |
| ○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    | 8,061  | 8,061  | 8,043  | 18   | 99.8 | 8,019  |
| -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 1,940  | 1,940  | 1,940  | -    | 100  | 2,131  |
| -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           | 2,705  | 2,705  | 2,687  | 18   | 99.3 | 2,401  |
| - 안전한위치정보이용환경조성         | 215    | 215    | 215    | -    | 100  | 183    |
| - 불법스팸대응체계구축            | 3,201  | 3,201  | 3,201  | -    | 100  | 3,304  |
| ○ 방송인프라지원               | 7,299  | 7,299  | 7,200  | 99   | 98.6 | 6,624  |
| -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 6,089  | 6,089  | 5,998  | 91   | 98.5 | 5,480  |
| - EBS 방송인프라 개선          | 1,210  | 1,210  | 1,202  | 8    | 99.3 | 1,144  |
| □ 방송통신 행정지원             | 33,378 | 33,745 | 32,879 | 866  | 97.4 | 40,123 |
| ○ 본부인건비                 | 22,545 | 22,440 | 22,429 | 11   | 100  | 25,926 |
| - 본부(총액대상)              | 22,545 | 22,440 | 22,429 | 11   | 99.9 | 25,926 |
| ○ 소속기관인건비               | 2,862  | 2,967  | 2,966  | 1    | 99.9 | 3,081  |
| - 방송통신사무소 인건비           | 2,862  | 2,967  | 2,966  | 1    | 99.9 | 3,081  |
| ○ 본부기본경비                | 3,137  | 3,435  | 2,999  | 290  | 87.3 | 3,371  |
| - 운영지원과(총액대상)           | 1,087  | 1,106  | 983    | 119  | 88.9 | 1,119  |
| - 기획조정관(총액대상)           | 178    | 178    | 176    | 1    | 98.9 | 190    |
| - 대변인(총액대상)             | 78     | 78     | 75     | 3    | 96.2 | 83     |
| - 방송정책국(총액대상)           | 24     | 24     | 23     | 1    | 95.8 | 24     |
| - 이용자정책국(총액대상)          | 34     | 34     | 34     | -    | 100  | 34     |

(단위: 백만원, % / □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구 분                  | 2025  |       |       |      |       | 2026  |
|----------------------|-------|-------|-------|------|-------|-------|
|                      | 예산    | 예산현액* | 집행    | 불용** | 집행률   | 예산    |
| - 방송기반국(총액대상)        | 17    | 17    | 17    | 0    | 100   | 15    |
| - 운영지원과              | 598   | 705   | 591   | 42   | 83.8  | 745   |
| - 기획조정관              | 714   | 857   | 709   | 98   | 82.7  | 747   |
| - 대변인                | 47    | 47    | 45    | 2    | 95.7  | 42    |
| - 방송정책국              | 107   | 120   | 107   | 3    | 89.2  | 137   |
| - 이용자정책국             | 153   | 158   | 144   | 12   | 91.1  | 140   |
| - 방송기반국              | 100   | 111   | 95    | 9    | 85.6  | 95    |
| ○ 소속기관기본경비           | 426   | 445   | 355   | 90   | 79.8  | 363   |
| - 방송통신사무소 기본경비(총액대상) | 106   | 106   | 97    | 9    | 91.5  | 106   |
| - 방송통신사무소 기본경비       | 320   | 339   | 258   | 81   | 76.1  | 257   |
| ○ 방송통신운영지원           | 4,408 | 4,458 | 4,130 | 328  | 92.6  | 7,382 |
| - 국내외협력업무수행          | 442   | 442   | 419   | 23   | 94.8  | 442   |
|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 361   | 361   | 328   | 33   | 90.9  | 366   |
| - 공익채널운영실적 모니터링 및 평가 | 237   | 237   | 183   | 54   | 77.2  | 242   |
| - 법정위원회운영            | 202   | 202   | 100   | 102  | 49.5  | 342   |
| - 방송통신위원회 시설운영       | 969   | 969   | 964   | 5    | 99.5  | 857   |
| -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 지원     | 185   | 185   | 100   | 85   | 54.1  | 205   |
| -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 841   | 891   | 880   | 11   | 98.8  | 3,932 |
| - 행정사무정보화(정보화)       | 1,171 | 1,171 | 1,156 | 15   | 98.7  | 996   |
| □ 방송미디어통신행정지원        | -     | 636   | 632   | 4    | 99.4  | 278   |
| ○ 본부인건비              | -     | 595   | 595   | -    | 100   | -     |
| - 방송미디어진흥국 인건비       | -     | 595   | 595   | -    | 100   | -     |
| ○ 본부기본경비             | -     | 41    | 37    | 4    | 90.2  | 278   |
| - 방송미디어진흥국(총액대상)     | -     | 18    | 18    | -    | 100.0 | 87    |
| - 방송미디어진흥국           | -     | 23    | 19    | 4    | 82.6  | 191   |

주: 집행률 = 집행액 / 예산현액

\* 예산현액(50,457백만원)=예산(48,738백만원)+이월(317백만원)+조직개편 이체액(1,402백만원)

\*\* 불용(987백만원)=차기이월(151백만원)+불용(836백만원)

○ 2025년에 이용(移用)은 없었으나 전용(轉用)은 163백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전용 사유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용역 계약 예산 부족분과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 예산 부족분, 인건비 부족분 등에 따른 전용임.

### < 전용 내역(2025) >

(단위: 백만원)

| 구분       | 프로그램<br>-세부사업                   | 전용 증액             |     | 프로그램<br>-세부사업                    | 전용 감액               |      |
|----------|---------------------------------|-------------------|-----|----------------------------------|---------------------|------|
|          |                                 | 세 목               | 금 액 |                                  | 세 목                 | 금 액  |
| 자체<br>전용 | 방송정책국<br>(7111-214)             | 일반연구비<br>(260-01) | 19  | 방송정책국<br>(7111-214)              | 일반수용비<br>210-01     | △19  |
| 자체<br>전용 | 방송사업 등<br>허가심사 지원<br>(7131-306) | 일반연구비<br>(260-01) | 6   | 방송사업 등<br>허가심사 지원<br>(7131-306)  | 임차료<br>(210-07)     | △6   |
| 자체<br>전용 | 방송통신사무소<br>인건비<br>(7102-151)    | 보수<br>(110-01)    | 105 | 본부(총액대상)<br>(7101-101)           | 기타직보수<br>(110-02)   | △105 |
| 자체<br>전용 | 운영지원과<br>(총액대상)<br>(7111-201)   | 고용부담금<br>(320-09) | 18  | 운영지원과<br>(총액대상)<br>(7111-201)    | 상용임금<br>(110-03)    | △18  |
| 승인<br>전용 | 방송미디어진흥국<br>인건비<br>(7201-101)   | 연가보상비<br>(110-05) | 4   | 방송미디어진흥국<br>(총액대상)<br>(7211-207) | 특근매식비<br>(210-05)   | △4   |
| 승인<br>전용 | 방송미디어진흥국<br>인건비<br>(7201-101)   | 연가보상비<br>(110-05) | 1   | 방송미디어진흥국<br>(총액대상)<br>(7211-207) | 직책수행경비<br>(250-02)  | △1   |
| 승인<br>전용 | 방송미디어진흥국<br>인건비<br>(7201-101)   | 보수<br>(110-01)    | 1   | 방송미디어진흥국<br>(7211-217)           | 공공요금및제세<br>(210-02) | △1   |
| 승인<br>전용 | 방송미디어진흥국<br>인건비<br>(7201-101)   | 보수<br>(110-01)    | 3   | 방송미디어진흥국<br>(7211-217)           | 임차료<br>(210-07)     | △3   |
| 승인<br>전용 | 방송미디어진흥국<br>인건비<br>(7201-101)   | 보수<br>(110-01)    | 6   | 방송미디어진흥국<br>(7211-217)           | 국내여비<br>(220-01)    | △6   |

### 3. 방송통신발전기금

#### (1) 일반 현황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sup>3)</sup>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방송인프라지원,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안전한 인터넷 정보활용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주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며, 기금운용·관리의 주된 사무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음.
- 기금의 수입 중 자체수입은 방송사업자 부담금, 주파수할당대가, 기타경상이전수입 등으로 구성됨. 이 중 방송사업자 부담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사업자 별로 부과체계에 따라 징수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System Operator), 홈쇼핑방송채널사

---

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 16. (이하 생략)

용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IPTV)로부터 각각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음.

- 2025회계연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 및 지출은 각각 8,180억원이며, 이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사업비로 2,187억원이 집행되었음.

### <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 및 지출 실적(2025) >

(단위: 백만원)

| 부 처            | 소 관                                             | 수 입<br>(817,977)    | 지 출<br>(817,977)              |
|----------------|-------------------------------------------------|---------------------|-------------------------------|
| 방송미디어통신<br>위원회 | 지상파,<br>중편·보도PP,<br>SO, 홈쇼핑,<br>위성방송,<br>IPTV 등 | 자체수입<br>(597,343)   | 방통위 사업비<br>(218,686)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정부내부수입<br>(187,258) | 정부내부지출,<br>여유자금 등<br>(81,211) |
|                |                                                 | 여유자금회수<br>(33,376)  | 과기부 사업비<br>(518,080)          |

## (2) 자금 조달

- 2025회계연도 기금 조달액은 8,180억원으로 계획액 8,805억원 대비 625억원(7.1%) 감소하였음. 이는 방송사업자 매출액감소 등으로 법정부담금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도('25년) 사업비 감소에 따른 정산잔액 감소로 기타경상이전 수입이 감소한 것 등에 기인함.
- 기금 조달액의 세부내역은 방송사업자 분담금, 주파수할당대가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자체수입이 5,973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등 정부내부수입이 1,873억원, 여유자금회수가 334억원임.

###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재 원           |           | 2025    |         |         | 2026      |
|------------|---------------|-----------|---------|---------|---------|-----------|
|            |               |           | 계 획     | 수 정     | 실 적     | 계 획       |
| 자체수입       | 법정<br>부담금     | 방송사업자 분담금 | 157,223 | 157,223 | 156,756 | 152,608   |
|            |               | 주파수할당 대가  | 406,110 | 406,110 | 408,251 | 695,917   |
|            | 통화금융기관 이자수입 등 |           | 5,320   | 5,320   | 7,111   | 3,133     |
|            |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           | 70,125  | 70,125  | 25,225  | 21,645    |
| 소 계        |               |           | 638,778 | 638,778 | 597,343 | 873,303   |
| 정부<br>내부수입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           | 177,258 | 187,258 | 187,258 | 50,000    |
| 소 계        |               |           | 177,258 | 187,258 | 187,258 | 50,000    |
| 보전수입       | 여유자금 회수       |           | 54,414  | 54,414  | 33,376  | 125,321   |
| 소 계        |               |           | 54,414  | 54,414  | 33,376  | 125,321   |
| 총 계        |               |           | 870,450 | 880,450 | 817,977 | 1,048,624 |

주 : 202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 반영

- 방송사업자 부담금의 경우 지상파방송사업자[중앙지상파, 지역지상파, 라디오, DMB]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이하 “중편·보도PP”(Program Provider)],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부담금을 징수함(「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기금의 조성)제2항·제3항·제4항).<sup>4)</sup>
- 2025년도에 부과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중편·보도PP의 분담금 징수율은 방송광고 매출액을 부과기준으로 하여,<sup>5)</sup> 중앙지상파 방송사업자는 0.68~4.12%,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는 0.24~1.14%, 라디오 방송사업자는 0.01~1.35%, DMB 사업자는 0.06%, 중편·보도PP는 1.36~3.13%임.

4) 징수율은 통상 징수금 고지서 발급(8.31.) 기준 한 달 전에 결정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분담금의 징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을 징수하려면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보도 기능을 갖고 있는 방송사업자의 경우, 언론의 독립성·중립성을 고려하여 보도 부문을 제외하고 방송광고 매출액을 부과기준으로 함. 반면, 보도 기능이 없는 유료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IPTV)의 경우 방송서비스 매출액을, 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방송사업 관련 영업이익을 부과기준으로 함.

# < 2025년도 부과 분담금 징수율(지상파, 종편·보도PP) >

(단위: %)

|                                 |      |                            |      |                                |      |
|---------------------------------|------|----------------------------|------|--------------------------------|------|
| <b>중앙4사 지상파<br/>(0.68~4.12)</b> |      | 안동 MBC                     | 0.33 | 평화방송                           | 0.21 |
|                                 |      | 원주 MBC                     | 0.24 | 기독교방송                          | 1.35 |
| KBS                             | 0.68 | 포항 MBC                     | 0.33 | 원음방송                           | 0.08 |
| EBS                             | 1.50 | MBC 강원영동                   | 0.79 | 극동방송                           | 0.12 |
| MBC                             | 4.12 | 이상 MBC 지사                  |      | 교통방송                           | 0.02 |
| SBS                             | 3.65 | OBS                        | 1.14 | 광주영어                           | 0.01 |
| <b>지역지상파<br/>(0.24~1.14)</b>    |      | KNN                        | 1.12 | 부산영어                           | 0.01 |
|                                 |      | TBC방송                      | 0.97 | <b>DMB<br/>(0.06)</b>          |      |
| 부산 MBC                          | 1.10 | 광주방송                       | 0.80 | YTN DMB                        | 0.06 |
| 대구 MBC                          | 0.69 | 대전방송                       | 0.64 | <b>종편·보도PP<br/>(1.36~3.13)</b> |      |
| 광주 MBC                          | 0.63 | 전주방송                       | 0.44 |                                |      |
| 대전 MBC                          | 0.66 | 청주방송                       | 0.49 | JTBC                           | 1.54 |
| 전주 MBC                          | 0.57 | 울산방송                       | 0.53 | 채널A                            | 2.67 |
| MBC 경남                          | 0.84 | G1                         | 0.55 | 매일방송                           | 2.98 |
| 춘천 MBC                          | 0.37 | 제주방송                       | 0.48 | 조선방송                           | 3.13 |
| MBC 충북                          | 0.52 | <b>라디오<br/>(0.01~1.35)</b> |      | YTN                            | 1.36 |
| 제주 MBC                          | 0.30 |                            |      | 연합뉴스TV                         | 2.50 |
| 울산 MBC                          | 0.48 | 경인방송                       | 0.05 |                                |      |
| 목포 MBC                          | 0.42 | YTN라디오                     | 0.15 |                                |      |
| 여수 MBC                          | 0.40 | 불교방송                       | 0.32 |                                |      |

자료: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 제2026-23호)

- 그 외 사업자의 2025년도 분담금 징수율은 방송사업 매출액을 부과 기준으로 하여(홈쇼핑사업자는 방송사업 관련 영업이익)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TV 사업자, IPTV 사업자는 1.5%, 홈쇼핑 사업자는 10~13%임.

# < 2025년도 부과 분담금 징수율(유료방송, 홈쇼핑) >

(단위: %)

| 사업자 | SO  | 위성TV | 홈쇼핑사업자                                                                                     | IPTV |
|-----|-----|------|--------------------------------------------------------------------------------------------|------|
| 징수율 | 1.5 | 1.5  | 1.TV방송채널사용사업자(데이터방송채널<br>사용사업 겸업자 포함) : 13.0<br>2.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데이터<br>방송채널사용사업자 : 10.0 | 1.5  |

자료: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 제2026-24호)

### (3) 자금 운용

- 2025회계연도 기금 운용액은 기금 조달액과 동일한 8,180억원으로 계획액 8,805억원 대비 625억원(7.1%) 감소하였음. 이는 수입 감소에 따른 여유자금운용이 감소한 것에 기인함.
- 이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에 지출된 기금 운용액(사업비)은 2,187억원으로 계획현액 2,198억원 대비 11억원(0.5%) 감소하였음.

####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조달 및 운용(2025) >

(단위: 백만원, %)

| 과 목    |       | 계 획     | 계획현액(A) | 실 적(B)  | 비 율(B/A) |
|--------|-------|---------|---------|---------|----------|
| 사업비    | 방미통위  | 219,191 | 219,781 | 218,686 | 99.49%   |
|        | 과기정통부 | 508,675 | 518,675 | 518,080 | 99.89%   |
|        | 합 계   | 727,866 | 738,456 | 736,766 | 99.77%   |
| 기금운영비  |       | 4,073   | 4,073   | 4,025   | 98.82%   |
| 정부내부지출 |       | 46,098  | 49,259  | 49,258  | 100%     |
| 여유자금운용 |       | 92,413  | 88,662  | 27,928  | 31.50%   |
| 합 계    |       | 870,450 | 880,450 | 817,977 | 92.90%   |

주: 여유자금운용 중복계상분 제외, 202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 반영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사업비를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은 계획현액 1,736억 7,600만원 중 1,726억 5,500만원(99.4%)을, ‘안전한 인터넷활용 기반구축’은 계획현액 204억 4,200만원 중 204억 4,200만원(100.0%)을, ‘콘텐츠 방송산업육성’은 계획현액 254억원 9,300만원 중 254억 9,300만원(100.0%)을, ‘통신정책지원’은 계획현액 1억원 7,000만원 중 9,600만원(56.5%)을 집행하였음.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비 결산(2025) >

(단위: 백만원, % /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구 분                    | 2025    |         |         |    |       |       | 2026    |
|------------------------|---------|---------|---------|----|-------|-------|---------|
|                        | 계획      | 계획액     | 집행      | 이월 | 불용    | 집행률   | 계획      |
| □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KCC)     | 173,086 | 173,676 | 172,655 | -  | 1,021 | 99.4  | 152,544 |
| ○ 방송인프라지원              | 58,228  | 58,228  | 58,228  | -  | 0     | 100.0 | 41,863  |
| - EBS프로그램제작지원          | 30,064  | 30,064  | 30,064  | -  | 0     | 100.0 | 30,383  |
| - 아리랑국제방송지원            | 12,070  | 12,070  | 12,070  | -  | 0     | 100.0 | -       |
| - 국악방송지원               | 5,258   | 5,258   | 5,258   | -  | 0     | 100.0 | -       |
| - KBS대외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 6,272   | 6,272   | 6,272   | -  | 0     | 100.0 | 5,916   |
| -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 4,464   | 4,464   | 4,464   | -  | 0     | 100.0 | 5,464   |
| - AM라디오 송출지원           | 100     | 100     | 100     | -  | 0     | 100.0 | 100     |
| ○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     | 76,152  | 76,742  | 75,836  | -  | 906   | 99.2  | 76,002  |
| - 미디어다양성증진             | 3,290   | 3,290   | 3,290   | -  | 0     | 100.0 | 2,155   |
| -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 457     | 457     | 457     | -  | 0     | 100.0 | 457     |
| - 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          | 21,870  | 21,870  | 21,870  | -  | 0     | 100.0 | 20,077  |
| - 언론중재위원회지원            | 14,545  | 14,545  | 14,545  | -  | 0     | 100.0 | 14,819  |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원          | 33,040  | 33,630  | 32,724  | -  | 906   | 97.3  | 34,751  |
| - 방송광고·협찬고지모니터링 기반구축   | 1,640   | 1,640   | 1,640   | -  | 0     | 100.0 | 1,692   |
| - 방송시장불공정행위조사지원        | 565     | 565     | 565     | -  | 0     | 100.0 | 620     |
| - 방송시장 상생환경 조성         | 270     | 270     | 270     | -  | 0     | 100.0 | 270     |
| -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조성     | 475     | 475     | 475     | -  | 0     | 100.0 | 1,061   |
| - 방송·통신쇼핑이용자보호연구용역     | -       | -       | -       | -  | -     | -     | 100     |
| ○ 시청자 권익보호 및 참여 활성화    | 23,709  | 23,709  | 23,694  | -  | 15    | 99.9  | 22,457  |
| - 시청자방송참여활성화지원         | 1,276   | 1,276   | 1,276   | -  | 0     | 100.0 | 894     |
| - 시청자미디어재단지원           | 22,433  | 22,433  | 22,418  | -  | 15    | 99.9  | 21,363  |
| - 공동체라디오 방송콘텐츠경쟁력강화    | -       | -       | -       | -  | -     | -     | 200     |
| ○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 8,285   | 8,285   | 8,274   | -  | 11    | 99.9  | 5,723   |
| - 방송콘텐츠 기반 강화          | 290     | 290     | 279     | -  | 11    | 96.2  | 270     |
| - 방송평가기반조성             | 850     | 850     | 850     | -  | 0     | 100.0 | 508     |
| - 방송광고공공인프라구축지원        | 1,932   | 1,932   | 1,932   | -  | 0     | 100.0 | 1,552   |
| - 혁신형중소기업방송광고활성화지원     | 1,883   | 1,883   | 1,883   | -  | 0     | 100.0 | 944     |
| - 방송정보활용기반체계화          | 452     | 452     | 452     | -  | 0     | 100.0 | 407     |
| -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 2,278   | 2,278   | 2,278   | -  | 0     | 100.0 | 1,442   |
| - OTT산업 경쟁력 강화         | 600     | 600     | 600     | -  | 0     | 100.0 | 600     |
| ○ 방송통신운영지원             | 6,712   | 6,712   | 6,623   | -  | 89    | 98.7  | 6,499   |
| -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           | 2,400   | 2,400   | 2,311   | -  | 89    | 96.3  | 1,768   |
| -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 1,626   | 1,626   | 1,626   | -  | 0     | 100.0 | 1,445   |
| - 재난방송 운영지원            | 2,686   | 2,686   | 2,686   | -  | 0     | 100.0 | 3,286   |
| □ 안전한 인터넷 활용기반 구축(KCC) | 20,442  | 20,442  | 20,442  | -  | 0     | 100.0 | 19,154  |
| ○ 안전한 인터넷정보 활용기반 구축    | 20,442  | 20,442  | 20,442  | -  | 0     | 100.0 | 19,154  |
| -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 1,360   | 1,360   | 1,360   | -  | 0     | 100.0 | 1,088   |
| - 클린인터넷이용환경조성          | 1,466   | 1,466   | 1,466   | -  | 0     | 100.0 | 1,246   |
| - 건전한사이버윤리문화조성         | 6,140   | 6,140   | 6,140   | -  | 0     | 100.0 | 5,219   |
| - 지능정보화이용자기반보호환경조성     | 792     | 792     | 792     | -  | 0     | 100.0 | 1,141   |
| - 위치정보산업활성화기반구축        | 1,920   | 1,920   | 1,920   | -  | 0     | 100.0 | 1,920   |
| - 불법유해정보차단기반마련         | 4,195   | 4,195   | 4,195   | -  | 0     | 100.0 | 4,429   |
| -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 3,370   | 3,370   | 3,370   | -  | 0     | 100.0 | 2,864   |
| - 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         | 921     | 921     | 921     | -  | 0     | 100.0 | 969     |
| - 안전한 AI 활용 기반 조성      | 278     | 278     | 278     | -  | 0     | 100.0 | 278     |

주: 집행률 = 집행액 / 계획현액

(단위: 백만원, % /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구 분                 | 2025   |           |        |     |     |       | 2026   |
|---------------------|--------|-----------|--------|-----|-----|-------|--------|
|                     | 계 획    | 계 획<br>현액 | 집 행    | 이 월 | 불 용 | 집행률   | 계 획    |
| □ 콘텐츠방송산업육성         | 25,493 | 25,493    | 25,493 | -   | 0   | 100.0 | 18,222 |
| ○ 방송통신콘텐츠진흥         | 24,397 | 24,397    | 24,397 | -   | 0   | 100.0 | 17,292 |
| - 방송콘텐츠 진흥          | 19,397 | 19,397    | 19,397 | -   | 0   | 100.0 | 16,792 |
| - 디지털콘텐츠 코리아 펀드     | 5,000  | 5,000     | 5,000  | -   | 0   | 100.0 | 500    |
| ○ 방송산업육성기반구축        | 1,096  | 1,096     | 1,096  | -   | 0   | 100.0 | 930    |
| - 디지털미디어산업 육성기반 구축  | 1,096  | 1,096     | 1,096  | -   | 0   | 100.0 | 930    |
| □ 통신정책지원            | 170    | 170       | 96     | -   | 74  | 56.5  | 170    |
| ○ 공정경쟁및이용자보호        | 170    | 170       | 96     | -   | 74  | 56.5  | 170    |
| -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 170    | 170       | 96     | -   | 74  | 56.5  | 170    |

주: 집행률 = 집행액 / 계획현액

○ 지원대상 별로 살펴보면, 방송사(KBS·EBS·아리랑국제방송·국악방송·지역 중소방송·AM라디오)에 총 582억 2,800만원(26.6%)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및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에 696억 8,700만원(31.9%)이, 그 밖의 사업비로 907억 7,100만원(41.5%)이 각각 집행되었음.

#### <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대상별 집행 내역(2025)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예 산     |       | 결 산     |       |
|-----------------------------------------|---------|-------|---------|-------|
|                                         | 금 액     | 비 중   | 금 액     | 비 중   |
| 계                                       | 219,781 | 100.0 | 218,686 | 100.0 |
| 방송사* 지원                                 | 58,228  | 26.5  | 58,228  | 26.6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br>시청자미디어재단,<br>언론중재위원회 운영지원 | 70,068  | 32.1  | 69,687  | 31.9  |
| 그 밖의 사업                                 | 90,945  | 41.4  | 90,771  | 41.5  |

\* KBS, EBS, 아리랑국제방송, 국악방송, 지역중소방송, AM라디오

#### (4)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 2025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항은 1건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원’ 세부사업을 증액하였음.

####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계획액    | 증감내역 |    | 계획현액   |
|--------------------------------------|--------|------|----|--------|
|                                      |        | 증액   | 감액 |        |
| <input type="checkbox"/>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원 | 33,040 | 590  | -  | 33,630 |

## (5) 재무 상태

- 2025년 말 기준 자산은 5,096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10억원이 증가하였음. 이는 금융자산의 출자금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함.
- 2025년 말 기준 부채는 1조 9,943억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발생 등으로 전년 대비 892억원이 증가하였음. 2025년 말 기준 순자산액은 △1조 4,847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682억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재정운영결과 682억원 손실 발생 등에서 기인함.

### < 방송통신발전기금 재무상태(2025년 말) >

(단위: 백만원)

| 과 목            |             | 금 액        |            |         |
|----------------|-------------|------------|------------|---------|
|                |             | 2025(A)    | 2024(B)    | 증감(A-B) |
| 자산             | 자 산         | 509,587    | 488,623    | 20,964  |
|                | - 금융자산      | 407,906    | 387,761    | 20,145  |
|                | - 유·무형자산    | 93,085     | 96,002     | △2,917  |
|                | - 기타자산      | 8,596      | 4,860      | 3,736   |
| 부채<br>및<br>순자산 | 부 채         | 1,994,304  | 1,905,111  | 89,193  |
|                | - 차입부채      | 1,847,837  | 1,659,921  | 187,916 |
|                | - 충당부채      | -          | -          | -       |
|                | - 기타부채      | 146,467    | 245,190    | △98,723 |
|                | 순 자 산       | △1,484,717 | △1,416,488 | △68,229 |
|                | - 적립금 및 잉여금 | △1,511,635 | △1,443,408 | △68,227 |
|                | - 순 자 산 조 정 | 26,918     | 26,920     | △2      |
| 부채 + 순자산       |             | 509,587    | 488,623    | 20,964  |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II. 검토의견

### 1. 기획조정관 소관

#### 【 일반회계 】

##### (1) 법정위원회 운영(7131-304)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업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 보완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남북교추위를 통한 사업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가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고유의 업무 범위를 방미통위 규칙에 구체화함으로써 운영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법정위원회 운영’ 사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정책수립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정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 2억 200만원 중 1억원(49.5%)이 집행되고, 1억 2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법정위원회 운영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년 |     |            |          |          |     |             |     | 2026년<br>예산 |
|------------------------|-------|-----|------------|----------|----------|-----|-------------|-----|-------------|
|                        | 예산액   |     | 전년도<br>이월액 | 이전용<br>등 | 예산<br>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br>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법정위원회 운영             | 202   | 202 | -          | -        | 202      | 100 | -           | 102 | 342         |
| ○위원회 수당 및 안건<br>사례비 등  | 137   | 137 | -          | -        | 137      | 97  | -           | 40  | 125         |
| ○참석교통비                 | 2     | 2   | -          | -        | 2        | 1   | -           | 1   | 2           |
| ○간담회비                  | 5     | 5   | -          | -        | 5        | 2   | -           | 3   | 5           |
| ○통신분쟁조정위원회<br>상임위원 인건비 | 58    | 58  | -          | -        | 58       | -   | -           | 58  | 210         |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동 사업으로 다음 10개의 법정위원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5회계연도 불용액이 방미통위 위원 구성 지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 연번 | 법정위원회명        | 법적 근거                              |
|----|---------------|------------------------------------|
| 1  | 방송평가위원회       | 「방송법」 제31조                         |
| 2  |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 「방송법」 제35조                         |
| 3  | 방송분쟁조정위원회     | 「방송법」 제35조의3                       |
| 4  | 미디어다양성위원회     | 「방송법」 제35조의4                       |
| 5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 「방송법」 제35조의5                       |
| 6  | 지역방송발전위원회     | 「방송법」 제42조의2<br>「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9조 |
| 7  |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 「방송법」 제76조의2                       |
| 8  |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2조                  |
| 9  |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
| 10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

## 나)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 조속한 구성·운영 필요

-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이하 “남북교추위”라 함)는 남북 간 방송·통신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법정 위원회임.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2조제4항<sup>6)</sup>은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남북교추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은 방미통위 위원 중 방미통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관련 부처 고위공무원과 남북관계 및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남북교추위를 구성하도록 하며,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함.
- 그런데, 남북교추위는 2024년 3월 제7기 위원회 임기가 만료된 후 2026년 8월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에 따라 2025년 회의실적 또한 전혀 없음.
  - 제7기 남북교추위는 공무원 4명, 민간위원 1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2년 출석회의 4회, 2023년 서면회의 4회 등 개최 실

---

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2조(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협력) ④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를 둔다.

적이 있었으나, 2024년 이후로는 개최되지 않음.

<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제7기 구성 >

|                 |                                                                          |
|-----------------|--------------------------------------------------------------------------|
| 공무원<br>(총 4명)   | - 방송통신위원회 2명(상임위원, 기획조정관)<br>- 통일부 1명(남북관계관리단장)<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국제협력관) |
| 민간위원<br>(총 16명) | - 북한전문 3명<br>- 방송전문 6명, 보도전문 2명, 통신전문 3명<br>- 법률전문 2명                    |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남북교추위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7)에 따라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남북교추위가 구성·운영되지 않음으로써 관련 사업에 대해서 남북교추위 심의를 거치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 방미통위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3135-302)’ 사업을 통해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개최,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9조(교류추진위원회의 심의)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 교류 추진위원회(이하 “교류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 간 교류·협력의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남북 간 교류·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남북 간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에 관한 사항
4. 주요 국제경기의 중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북 간 교류·협력을 위하여 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동 사업들은 남북간 교류·협력과 관련된 사업이나, 2024년과 2025년에 남북교추위가 구성·운영되지 못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심의 없이 추진되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상임·비상임위원 임명·위촉이 지연되면서 2024년 및 2025년에 제8기 남북교추위 구성이 어려웠던 사정까지는 참작될 수 있으나, 2026년 4월 방미통위 위원 6명이 임명·위촉된 이후 다른 7개 법정위원회에 대하여는 신규 위원을 위촉<sup>8)</sup>하였음에도 남북교추위는 여전히 구성되지 아니하였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대하여 방미통위는 현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법정위원회 구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남북교추위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하여 정상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남북교추위 위원 구성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의 입법 취지와 지난 남북교추위 위원 구성 현황으로 미루어 볼 때,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한 관계 부처 협의 및 북한·방송통신·법률 관련 전문가로부터의 의견 청취 차원에서도 남북 방송통신 교류 사업 추진에 앞서 남북교추위 심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업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 보

---

8) “방송 관련 7개 법정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5.20.)

완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남북교추위를 통한 사업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고유의 업무범위 구체화 필요

-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시청자권익위”라 함)는 방송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에 관한 시청자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법정 위원회임.
- 「방송법」 제35조<sup>9)</sup>는 시청자권익위 구성·운영 목적으로 시청자 의견 수렴, 시청자의 정당한 권익 침해 등 시청자 불만 및 청원사항에 대한 심의 수행을 규정하고 있음.
- 시청자권익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방미통위 규칙에 따르면, 시청자권익위는 방미통위 위원과 방송·언론·교육·문화·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총 7~9인의 위원)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임.
- 지난 2026년 5월 신규 위촉<sup>10)</sup>된 시청자권익위 제18기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음(임기: 2026.5.20. ~ 2027.5.19.).

---

9) 「방송법」

제35조(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라 한다)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의 정당한 권익 침해 등 시청자불만 및 청원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둔다.

10) “방송 관련 7개 법정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6.5.20.)

| 구 분 | 성 명 | 비 고                    |
|-----|-----|------------------------|
| 위원장 | 고민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 위원  | 박경숙 | 제주도 언론홍보학과 명예교수        |
|     | 장기하 | JTBC 교양팩추얼본부 팩추얼제작사업담당 |
|     | 진보래 | 중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     | 표시영 |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     | 방동희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지영선 | 법무법인 명륜 변호사            |
|     | 김수정 |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
|     | 심우민 | 경인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그런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방미통위규칙)은 불만에 대한 심의와 처리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sup>11)</sup>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회의 안건을 보면 시청자권익위가 시청자 의견 수렴 및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2024년 제16기 시청자권익위 회의에서는 시청자 불만처리와 연관 없는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 역량교육 등의 업무보고가 회의 안건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1회에 그친 2025년 시청자권익위 회의에서도 ‘제17기 위원회 개요 및 2025년 사업계획과 민원처리 결과’를 보고한 것이 전부임.

- 또한,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주기와 횟수를 살펴보면, 시청자권익위 정기회를 매월 1회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방미통

11) 제4조(불만처리의 신청), 제5조(불만신청의 각하), 제13조(불만에 대한 심의), 제14조(의견청취), 제15조(처리), 제16조(처리기간), 제17조(분쟁의 조정) 등

위 규칙<sup>12)</sup>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

### < 최근 3년간 시청자권익보호위 회의 안건 목록 >

| 구 분  | 개최일         | 회의 안건                                                                                                                                                      |
|------|-------------|------------------------------------------------------------------------------------------------------------------------------------------------------------|
| 제15기 | 2023.03.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5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계획(보고)</li> <li>'23년도 시청자 권익증진 사업계획(보고)</li> </ul>                                                |
|      | 2023.06.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디어 리터러시 제고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보고)</li> <li>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현황(보고)</li> </ul>                                               |
|      | 2023.1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청자권익정보 온라인플랫폼(미디인) 개선 주요내용(보고)</li> <li>미디어교육 종합계획(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결과(보고)</li> </ul>                                |
|      | 2023.12.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안)(보고)</li> </ul>                                                                                     |
| 제16기 | 2024.4.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6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개요 및 운영계획(보고)</li> <li>'24년도 시청자 권익보호 지원 사업계획(보고)</li> </ul>                                        |
|      | 2024.7.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4년 시청자미디어재단 업무현황(보고)</li> <li>「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 수립현황(보고)</li> <li>2024년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보고)</li> </ul>                 |
| 제17기 | 2025.5.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7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개요 및 운영계획(보고)</li> <li>2025년도 시청자 권익보호 지원 사업계획(보고)</li> <li>2025년 1분기 민원처리(국민신문고) 결과(보고)</li> </ul> |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6.)

○ 한편, ‘시청자위원회’ 제도가 주요 방송사업자로 전면 확대 적용되면서 현장 중심의 권익보호 체계가 구축된바, 시청자권익위는 시청자위원회와의 기능 중복으로 인해 고유의 정체성이 약화된 측면이 있음.

- 종전에는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와 보도·홈쇼핑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에만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지난

12)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회의) ①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5년 8월 「방송법」 개정으로 그 대상이 ‘지상파텔레비전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및 IPTV 제공사업자’로까지 확대되었음.

< 법률 제21043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조문대비표 >

| 종 전<br>(법률 제21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개 정<br>(법률 제21043호, 2026.2.27. 시행)                                                                                                                                                           |
|-----------------------------------------------------------------------------|----------------------------------------------------------------------------------------------------------------------------------------------------------------------------------------------|
| 第87條(視聽者委員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放送事業者는 視聽者の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視聽者委員會를 두어야 한다. | 第87條(視聽者委員會) ① -----<br>-----<br>-----.                                                                                                                                                      |
| 1.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br>2.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 1. <u>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u><br>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br>3.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br>4. <u>종합유선방송사업자</u><br>5. <u>위성방송사업자</u><br>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u>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u> |
|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 7.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br>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                                                                                                                                  |

- 시청자위원회는 ① 방송사에 대하여 직접적인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석 및 의견 진술이 가능하며,<sup>13)</sup>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

13) 「방송법」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①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 또는 채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그 밖에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②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구를 원칙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점<sup>14)</sup>에서 권익보호위와 역할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② 지역·분야·계층의 시청자를 대표하도록 개별 방송사업자마다 별도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청자권익위보다 더 실효적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도 있다고 보임.

○ 이처럼 「방송법」 개정을 통해 개별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가 시청자 의견을 1차적으로 청취하는 창구로 확대 개편되었으므로, 시청자권익위는 개별 민원에 대한 처리보다는 복수 사업자에 걸친 시청자 피해 구제, 시청자위원회 지원 등 종합적 시청자 권익보호 기구로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가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고유의 업무 범위를 방미통위 규칙에 구체화함으로써 운영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14) 「방송법」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① 제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 방송통신발전기금 】

### (2)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3135-301)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책연구의 다양성 확보 및 신진연구자에 대한 기회 확대를 위하여 특정 기관 및 연구자에 정책연구용역이 편중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존 성과지표를 정비하고, ‘학술행사 지원 등’ 내역사업에 관한 성과지표를 신설하여 성과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 사업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정책 수립 전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학술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동 사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계획액 24억원 중 23억 1,100만원(96.3%)이 집행되고 8,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년 |       |                |            |       |                  |       | 2026년<br>계 획 액 |
|---------------------|-------|-------|----------------|------------|-------|------------------|-------|----------------|
|                     | 계 획 액 |       | 전 년 도<br>이 월 액 | 계 획<br>현 액 | 지 출 액 | 다 음 년 도<br>이 월 액 | 불 용 액 |                |
|                     | 당 초   | 수 정   |                |            |       |                  |       |                |
| □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        | 2,400 | 2,400 | -              | 2,400      | 2,311 | -                | 89    | 1,618          |
| ○ 방송통신융합 기반<br>정책연구 | 2,250 | 2,250 | -              | 2,250      | 2,216 | -                | 34    | 1,618          |
| ○ 방송통신 학술행사<br>지원 등 | 150   | 150   | -              | 150        | 95    | -                | 55    | 150            |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나) 특정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편중 부적절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방송통신융합 기반 정책연구’는 방미통 위 주요 업무를 충실하게 지원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 주요 정책 수립 전 전문적인 조사·연구, 국내외 사례 파악 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동 내역사업의 2025년도 계획액 22억 5,000만원 중 22억 1,600만원(98.5%)이 집행되었고 3,400만원은 불용되었음.

○ 그런데, 동 사업을 통한 최근 5년간 정책연구과제 수행 현황을 보면, 수행 건수 상위 3개 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57%를 차지하였으며, 정책연구용역비 집행액은 총 62억 8,200만원으로 약 60%를 차지하였음.

- 특히, 동 사업의 최근 5년간 전체 과제 건수(194건) 중 단독입찰에 의한 수의계약 비율이 66.5%(129건)로 높은 수준인데, 수행 건수 상위 3개 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도 74건으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

#### < 최근 5년간 정책연구과제 수행 상위 3개 기관 >

(단위: 건, 백만원)

| 기관명                      | 과제 수행 건수     |         | 정책연구용역비 집행액     |
|--------------------------|--------------|---------|-----------------|
|                          | 건수 (비율)      | 수의계약 건수 | 금액 (비율)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68 (35.1%)   | 46      | 4,206 (40.1%)   |
| 디지털미래연구소<br>(舊 미디어미래연구소) | 24 (12.4%)   | 16      | 1,172 (11.2%)   |
|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 19 (9.8%)    | 12      | 904 (8.6%)      |
| 소 계                      | 111 (57.2%)  | 74      | 6,282 (59.9%)   |
| 전 체                      | 194 (100.0%) | 129     | 10,487 (100.0%) |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또한, 최근 5년간 정책연구과제 수행 건수 상위 연구자 5명이 차지하는 비율이 건수와 집행액 기준 모두 20%를 상회하였고, 2025년에는 연구자 2명에 대하여 각각 1억 8,000만원과 1억 1,500만원의 정책연구용역비가 집행되었음.

- 연구자 기준으로 수의계약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으며, 특정 연구자의 경우 5년간 수행한 과제 8건 중 7건이 수의계약에 해당함.

### < 최근 5년간 정책연구과제 입찰 상위 연구자 >

(단위: 건, 백만원)

| 연구자명  | 소 속                                | 과제 수행 건수     |            | 정책연구용역비 집행액     |
|-------|------------------------------------|--------------|------------|-----------------|
|       |                                    | 건수 (비율)      | 수의계약<br>건수 | 금액 (비율)         |
| 김 ○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11 (5.7%)    | 3          | 688 (6.6%)      |
| 천 ○ ○ | 미디어미래연구소,<br>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 11 (5.7%)    | 4          | 503 (4.8%)      |
| 노 ○ ○ | 미디어미래연구소,<br>한국방송학회,<br>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 8 (4.1%)     | 7          | 417 (4.0%)      |
| 김 ○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6 (3.1%)     | 4          | 431 (4.1%)      |
| 정 ○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6 (3.1%)     | 2          | 371 (3.5%)      |
| 소 계   |                                    | 42 (21.6%)   | 20         | 2,409 (23.0%)   |
| 전 체   |                                    | 194 (100.0%) | 129        | 10,487 (100.0%) |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 이처럼 특정 기관 및 연구자 중심으로 정책연구용역이 편중되어 수행될 경우, 다양한 시각을 반영한 정책 대안 도출이 제한될 수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전문성과 정책 이해도가 높은 연구자가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특정 연구자에 대한 수주 집중으로 타 연구자의 진입 기회가 제약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연구 생태계의 세대교체와 다변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아울러, 2025년 기준 특정 연구자가 책임연구자로서 4개 과제를 동시에 수행한 사례가 있는데, 이처럼 개별 연구자가 다수의 정책연구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 연구 몰입도 분산으로 인한 연구 결과의 질적 저하나 불성실한 연구 수행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정책연구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리 방안이 필요함.
- 따라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책연구의 다양성 확보 및 신진연구자에 대한 기회 확대를 위하여 특정 기관 및 연구자에 정책연구용역이 편중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다) 학술행사 관련 성과지표 부재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방송통신 학술행사 지원 등’은 산·학·연 주관 세미나를 지원하여 방송통신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정책연구 성과 확산 및 지식 공유 기반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 2025년 계획액 1억 5,000만원(정책연구비 1억 4,000만원, 일반수용비 1,000만원) 중 9,500만원이 집행되고 5,5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이 63.3%로 저조하였음.
- 동 내역사업은 매년 연례적으로 1억원 안팎의 기금을 지출하고 있으나, 최근 4년간 동 내역사업을 통한 학술행사 지원실적이

2022년 14개 → 2023년 12개 → 2024년 8개 → 2025년 6개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음.

- 이와 같은 집행률 및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지원된 학술행사를 통해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과 방미통위 정책 수립에 대한 활용 방향 등 실질적인 성과와 기여도가 모호하며, 학술행사 지원 사업에 관한 성과지표가 부재하여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환류하기 위한 체계가 미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동 세부사업의 성과지표인 ‘정책연구 활용보고서 등록률’과 ‘정책연구 결과 활용률’ 모두 ‘방송통신융합 기반 정책연구’ 내역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학술행사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더욱이, 최근 4년간 매년 목표를 99%로 설정하고 100%의 실적을 달성해 온 ‘정책연구 활용보고서 등록률’ 지표는 단순 행정절차 이행 여부만을 확인하는 지표로서 성과 측정의 실효성과 도전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학술행사 관련 성과지표로 대체할 필요가 있겠음.

< 최근 4년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 성과지표                  |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정책연구 활용보고서<br>등록률 (%) | 목표 | 99    | 99    | 99    | 99    |
|                       | 실적 | 100   | 100   | 100   | 100   |
| 정책연구결과<br>활용률 (%)     | 목표 | 88    | 89    | 90    | 91    |
|                       | 실적 | 89.18 | 89.2  | 90    | 92.7  |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따라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존 성과지표를 정비하고, ‘학술행사 지원 등’ 내역사업에 관한 성과지표를 신설하여 성과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3)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3135-302)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동 사업의 유사한 내역사업 간 통폐합을 추진하여 사업 구조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출연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사업은 OTT 등 신규 미디어 확산과 디지털 통상질서 재편에 따라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규범 형성(Rule-Setting)’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방송미디어 분야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내 방송미디어·콘텐츠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려는 사업임.
- 동 사업은 내역사업별로 출연사업 또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2025회계연도 계획액 16억 2,600만원 전액 지출되었음.
- ‘방송통신 국제협력 인프라 강화’ 내역사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대한 출연사업이고,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내역사업은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이며, 그 외 내역사업은 전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임.

## <2025회계연도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년 |       |                |            |                  |                |       | 2026년<br>계획 |
|------------------------|-------|-------|----------------|------------|------------------|----------------|-------|-------------|
|                        | 계 획 액 |       | 전 년 도<br>이 월 액 | 계 획<br>현 액 | 지 출 액<br>[실집행액]  | 차 년 도<br>이 월 액 | 불 용 액 |             |
|                        | 당 초   | 수 정   |                |            |                  |                |       |             |
| □ 방송통신 국제<br>협력 강화     | 1,626 | 1,626 | -              | 1,626      | 1,626<br>[1,565] | -              | -     | 1,445       |
| ○ 방송통신 국제협력<br>인프라 강화  | 254   | 254   | -              | 254        | 254<br>[230]     | -              | -     | 254         |
| ○ 방송 국제기구<br>공동협력 사업   | 90    | 90    | -              | 90         | 90<br>[89]       | -              | -     | 90          |
| ○ 방송통신분야 통상<br>대응체계 구축 | 270   | 270   | -              | 270        | 270<br>[259]     | -              | -     | 270         |
| ○ 남북 방송통신<br>국제 컨퍼런스   | 81    | 81    | -              | 81         | 81<br>[78]       | -              | -     | -           |
| ○ 통일 방송프로그램<br>제작지원    | 117   | 117   | -              | 117        | 117<br>[115]     | -              | -     | 117         |
| ○ 북한 방송통신<br>이용실태 조사   | 100   | 100   | -              | 100        | 100<br>[99]      | -              | -     | -           |
| ○ 방송공동제작<br>협력강화       | 354   | 354   | -              | 354        | 354<br>[350]     | -              | -     | 354         |
| ○ 공동제작협정 제작<br>지원      | 360   | 360   | -              | 360        | 360<br>[345]     | -              | -     | 360         |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나) 유사 내역사업 간 통폐합 통한 사업구조 단순화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방송공동제작 협력강화’는 한국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정부와의 방송콘텐츠 교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방송사업자 등 지원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방송공동제작 협력강화’ 내역사업의 사업 내용 >

| 내내역사업                 | 예산<br>(백만원) | 사업 내용                                                                                                            |
|-----------------------|-------------|------------------------------------------------------------------------------------------------------------------|
| 공동제작협정<br>협상대응        | 64          | FTA에 근거가 마련된 국가와의 공동제작 프로그램에 국내 프로그램이 인정받고, 제작지원, 인력·장비의 출입국 간소화 등 혜택을 부여받기 위한 방송공동제작협정 체결 추진하기 위한 협상 대응, 실태조사 등 |
| 방송콘텐츠<br>규제 및<br>시장조사 | 128         | 해외 방송시장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한국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및 국제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
| 국제콘퍼런스<br>개최          | 162         | 한국 방송콘텐츠에 대한 국제적 관심 제고 및 방송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방송 공동제작 국제콘퍼런스 개최                                                         |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그러나 동 내역사업 중 ‘공동제작협정 협상대응’은 FTA체결국 등과의 방송공동제작 협정 체결 및 개선 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성격상 ‘방송통신 통상대응체계 구축’ 내역사업으로 이관하여 통합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방송통신 통상대응체계 구축’ 내역사업은 글로벌 통상 환경 및 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상 현안에 대한 분석·자문, 국내 법제도와 통상규범 간 정합성 분석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방송통신 및 전자상거래 분야 통상 협상 대응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있음.

- ‘공동제작협정 협상대응’ 내역사업 역시 통상 협정 및 협상 쟁점 분석,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방송통신

통상대응체계 구축' 내역사업과 사업 성격 및 추진 방식이 유사하므로, 두 사업을 하나의 내역사업으로 연계·통합함으로써 통상 대응에 관한 전문성과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동 사업 내 유사 내역사업 간 비교 >

| 내역사업명              | 방송공동제작 협력강화                                        | 방송통신 통상대응체계 구축                                               |
|--------------------|----------------------------------------------------|--------------------------------------------------------------|
| 2025회계연도<br>계획액    | 354백만원                                             | 270백만원                                                       |
| 사업수행기관<br>(사업수행형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br>(민간보조)                                | 정보통신정책연구원<br>(민간보조)                                          |
| 주요<br>사업내용         | - 공동제작협정 협상 대응<br>- 방송콘텐츠 규제 및 시장조사<br>- 국제콘퍼런스 개최 | - 방송통신 및 전자상거래 분야<br>통상협상 대응<br>-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회의<br>개최, 법률자문 |
| 공통점                | 국제통상 협상 및 방송통신분야 국제협력 지원                           |                                                              |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또한, '방송공동제작 협력강화' 내역사업 중 '국제콘퍼런스 개최'는 민간 분야 공동제작 및 방송콘텐츠 교류 활성화를 위해 방송공동제작 국제콘퍼런스(IBCC)를 개최하고 우수 공동제작물을 선정·시상하는 사업으로,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내역사업과 통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내역사업은 방송공동제작협정 체결국과의 공동제작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하여 한국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임.

- 방송공동제작 국제컨퍼런스 역시 지원을 받은 우수 공동제작물·제작사를 소개하고 방송공동제작 전략 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과 최종 목표 및 수혜 대상이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 따라서 분산 운영 중인 두 사업을 통합하여 제작비 지원부터 글로벌 교류·유통 지원으로 이어지는 추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중복 행정 요소를 제거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 동 사업 내 유사 내역사업 간 비교 >

| 내역사업명              | 방송공동제작 협력강화                                        |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
|--------------------|----------------------------------------------------|------------------------------------------|
| 2025회계연도<br>계획액    | 354백만원                                             | 360백만원                                   |
| 사업수행기관<br>(사업수행형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br>(민간보조)                                | 한국전파진흥협회<br>(민간보조)                       |
| 주요<br>사업내용         | - 공동제작협정 협상 대응<br>- 방송콘텐츠 규제 및 시장조사<br>- 국제컨퍼런스 개최 | - 공동제작프로그램 제작지원<br>-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및 홍보 등 |
| 공통점                | 방송공동제작 활성화 및 해외 진출 등 지원                            |                                          |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이처럼 파편화된 내역사업 중 유사·중복성이 높은 사업 간 통합을 통해 세부·내역사업 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 및 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동 사업의 유사한 내역사업 간 통폐합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 구조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 출연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문제 시정 방안 모색 필요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소속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총수입(352억 3,280만원) 중 정부 출연금(156억 1,700만원)이 44.3%를 차지하며, 출연금 대부분을 인건비(115억 7,300만원)에 충당하는 출연기관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14조<sup>15)</sup>는 출연금을 지원받은 기관이 보조금을 이중으로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sup>16)</sup>에서도 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원할

---

1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예산처)

#### 14. 민간보조사업

##### 1. 적용대상

- ☐ 원칙적으로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 정책상 장려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사업 중 6개 내역사업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대한 보조사업이라는 문제가 있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수행 내역사업의 2025회계연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 2025년 |     |                |            |               |                |       | 2026년<br>계획 |
|------------------------|-------|-----|----------------|------------|---------------|----------------|-------|-------------|
|                        | 계 획 액 |     | 전 년 도<br>이 월 액 | 계 획<br>현 액 | 지출액<br>[실집행액] | 차 년 도<br>이 월 액 | 불 용 액 |             |
|                        | 당 초   | 수 정 |                |            |               |                |       |             |
| ○ 방송 국제기구<br>공동협력 사업   | 90    | 90  | -              | 90         | 90<br>[89]    | -              | -     | 90          |
| -민간경상보조<br>(320-01)    | 90    | 90  | -              | 90         | 90<br>[89]    | -              | -     | 90          |
| ○ 방송통신분야 통상<br>대응체계 구축 | 270   | 270 | -              | 270        | 270<br>[259]  | -              | -     | 270         |
| -민간경상보조<br>(320-01)    | 270   | 270 | -              | 270        | 270<br>[259]  | -              | -     | 270         |
| ○ 남북 방송통신<br>국제 컨퍼런스   | 81    | 81  | -              | 81         | 81<br>[78]    | -              | -     | -           |
| -민간경상보조<br>(320-01)    | 81    | 81  | -              | 81         | 81<br>[78]    | -              | -     | -           |
| ○ 통일 방송프로그램<br>제작지원    | 117   | 117 | -              | 117        | 117<br>[115]  | -              | -     | 117         |
| -민간경상보조<br>(320-01)    | 117   | 117 | -              | 117        | 117<br>[115]  | -              | -     | 117         |
| ○ 북한 방송통신<br>이용실태 조사   | 100   | 100 | -              | 100        | 100<br>[99]   | -              | -     | -           |
| -민간경상보조<br>(320-01)    | 100   | 100 | -              | 100        | 100<br>[99]   | -              | -     | -           |
| ○ 방송공동제작<br>협력강화       | 354   | 354 | -              | 354        | 354<br>[350]  | -              | -     | 354         |
| -민간경상보조<br>(320-01)    | 354   | 354 | -              | 354        | 354<br>[350]  | -              | -     | 354         |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 □ 민간보조 제외사업

○ 출연금이 계상된 출연연구기관\*은 지원 불가

- 다만, 업무유관 및 전문성,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간접 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상의 출연연구기관

민간보조사업이더라도 간접 보조사업자<sup>17)</sup>에게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연기관에 대한 보조가 가능하나, 동 사업에서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직접 보조사업자로서 예외적 허용 범위에 해당하지도 아니함.

- 동 사업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5년간 73억원 이상 교부되었음.

### < 동 사업에서 KISDI 대상 보조금 교부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 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합 계   |
|--------------|-------|-------|-------|-------|-------|-------|
| 보조금 교부<br>금액 | 1,465 | 2,082 | 1,482 | 1,334 | 1,012 | 7,375 |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이에 대하여 방미통위는 2017년 국회로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수행하는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출연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방통위의 개별사업들은 전부 보조사업으로 전환된 것이며, 방송통신 분야 국제통상 관련 전문성을 고려할 때 동 사업 추진 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의 업무 수행 및 보조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1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그러나, 동 사업의 내역사업을 반드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수행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을 찾기 어려움에도 법률에 반하는 보조금 교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은 비정치적 분야의 통일 방송 프로그램 공모·선정 후 제작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 계획액 1억 1,700만원 중 7,800만원(66.7%)이 제작용역비에 지출되고, 그 외 예산도 대체로 사업인력 보수(1,900만원)나 위촉인력 보수(1,200만원)로 집행된다는 점에서 국제통상 관련 전문성을 요한다고 보기 어려움.
- 아울러, 사업 목적 및 형태가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으로 유사한 ‘공동제작 협정 제작지원’ 내역사업이 한국전파진흥협회(RAPA)를 통해 수행되는 것과 비교할 때, 출연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관행을 고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별 성격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 변경 등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방미통위는 출연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방미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을 통해 방미통위 산하에 설립 예정인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임.

## 2. 방송정책국 소관

### 【 일반회계 】

#### (4) 공익채널 운영실적 모니터링 및 평가(7131-303)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동 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한 법령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국회 시정요구를 미이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공익채널 운영실적 모니터링 및 평가’ 사업은 「방송법」 제70조18)에 따른 장애인복지채널, 공익채널 방송실적을 점검하고 이를 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함으로써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사업임.
- 동 사업은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민간위탁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 2억 3,700만원 중 1억 8,250만원(77.0%)이 시청자미디어재단에 교부되어 집행되었고, 5,450만원이 불용되었음.

---

#### 18) 「방송법」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 및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어야 한다.

⑧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해당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채널의 선정절차, 선정기준, 운용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25회계연도 공익채널 운영실적 모니터링 및 평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년 |     |            |          |          |                  |            |      | 2026년<br>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br>이월액 | 이전용<br>등 | 예산<br>현액 | 집행액<br>실집행액      | 차년도<br>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  |            |          |          |                  |            |      |              |
| □ 공익채널 운영실적<br>모니터링 및 평가 | 237   | 237 | -          | -        | 237      | 182.5<br>[176.5] | -          | 54.5 | 242          |
| ○ 공익·장애인복지채널<br>방송 모니터링  | 190   | 190 | -          | -        | 190      | 143<br>[142.9]   | -          | 47   | 195          |
| ○ 공익·장애인복지채널<br>프로그램 평가  | 47    | 47  | -          | -        | 47       | 39.5<br>[33.6]   | -          | 7.5  | 47           |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나) 법령상 근거 없는 민간위탁 부적정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4년부터 동 사업을 방미통위 소관 공공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민간위탁하여 수행(사업수행기간: 2024~2026년)하고 있음.

- 종전에는 동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수행하였으나, 「20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공익·장애인복지채널의 선정 및 운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국가 사무이므로 민간위탁으로 비목을 전환하도록 지적되면서, 방미통위는 2023년 12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위탁기관으로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선정하였음.

○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민간위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sup>19)</sup>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져야 함.

○ 그러나, 동 사업은 「방송법」 제70조제3항과 제8항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것임에도 같은 법 제10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sup>20)</sup> 등 법령상 근거 없이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의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음.

○ 특히, 2024년도 결산심사에서 동일한 취지로 국회가 시정을 요구<sup>21)</sup>한 바 있는데, 방미통위는 이에 대하여 방미통위가 구성되

---

19)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0) 「방송법」

**제10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그 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탁한다. (각 호 생략)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 (각 호 생략)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법 제80조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전송·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를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각 호 생략)

는 대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하였으나, 방미통위  
위원 7인 중 6인이 임명·위촉되었음에도 시정요구사항 이행이  
추진되지 않고 있음.

- 「방송법」 제104조<sup>22)</sup>는 같은 법 제103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 종사자는 「형법」 등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  
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상 근거 없이 사무를 위탁  
할 경우 해당 사무 종사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없어 공무상

21) 시정요구(11): 사업 근거 보완 및 수행기관 검토 필요 (제도개선)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공익채널 운영실적 모니터링 및 평가(7131-303)                                                                                                                                                                                                                                                                                                                                                                                                                                                                                                                                                                                                                                                                                                                                                                                                                                                                                                                                      |
|--------|---------------------------------------------------------------------------------------------------------------------------------------------------------------------------------------------------------------------------------------------------------------------------------------------------------------------------------------------------------------------------------------------------------------------------------------------------------------------------------------------------------------------------------------------------------------------------------------------------------------------------------------------------------------------------------------------------------------------------------------------------------------------------------------------------------------------------------------------------------------------------------------------------------------------------------------------------------------------------|
| 지적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사업은 2024년부터 민간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되었으나, 민간위탁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미흡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음</li> <li>- 동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2022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국가사무에 대하여 민간의 사무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되어 2024년에는 예산을 모두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음</li> <li>- 그러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그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함</li> </ul> <div>「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br/>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br/>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br/>민간위탁할 수 있다.</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14조를 법령상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명확한 근거로 보기 어려움</li> </ul> <div>「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br/>제14조(공익채널 실적평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채널 운영 계획 준수 여부, 공익채널 선정<br/>조건 이행 여부 및 방송 프로그램의 공익적 수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공익채널 운영실적평가를<br/>실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채널 운영실적평가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전담<br/>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div> |
| 시정요구사항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익채널 운영실적 모니터링 및 평가 사업의 민간<br>위탁을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것 (제도개선)                                                                                                                                                                                                                                                                                                                                                                                                                                                                                                                                                                                                                                                                                                                                                                                                                                                                                                   |

22) 「방송법」

제10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②제103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비밀누설죄, 수뢰죄 등의 처벌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처럼 명확한 법령상 근거 없는 위탁은 공무원 의제 조항 미 적용에 따른 공적 책임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동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의 법령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국회 시정요구를 미이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 【 방송통신발전기금 】

### (5) 재난방송 운영지원(3135-307)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운영을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비목을 전환하고 관련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재난방송 운영지원’ 사업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 2에 따른 재난방송등<sup>23)</sup>의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 재난방송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동 사업은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계획액 26억 8,600만원 중 ‘KBS 재난방송 운영지원’ 내역사업의 21억 1,900만원은 KBS로,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운영’ 내역사업의 5억 6,700만원은 협회로 전액 교부되었음.

23)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

## <2025회계연도 재난방송 운영지원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년 |       |            |          |                  |            |     | 2026년<br>계획액 |
|--------------------|-------|-------|------------|----------|------------------|------------|-----|--------------|
|                    | 계획액   |       | 전년도<br>이월액 | 계획<br>현액 | 지출액<br>[실집행액]    | 차년도<br>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    |            |          |                  |            |     |              |
| □ 재난방송 운영지원        | 2,686 | 2,686 | -          | 2,686    | 2,686<br>[2,627] | -          | -   | 3,286        |
| ○KBS 재난방송 운영<br>지원 | 2,119 | 2,119 | -          | 2,119    | 2,119<br>[2,071] | -          | -   | 2,719        |
| ○재난방송 종합상황실<br>운영  | 567   | 567   | -          | 567      | 567<br>[556]     | -          | -   | 567          |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나)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운영사업의 민간보조사업 추진 부적절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운영’은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차질 없이 재난방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방미통위 내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동 내역사업은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으로, 협회는 교부받은 5억 6,700만원 중 5억 5,600만원 (98.1%)을 집행하였음.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sup>24)</sup>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자,

2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등을 송출할 수 있다.

SO, 위성방송사업자, 종편PP, 보도PP는 재해·재난·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 경보 방송을 할 의무가 부과됨.

- 방미통위는 재난방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체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사업자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sup>25)</sup>

○ 이에 방미통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를 위한 재난방송 의무방송사(144개사)의 재난방송 실시현황을 24시간 교대근무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인 상황관리를 수행하고자 방미통위 내에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음.

- 방미통위에 따르면, 종합상황실은 AI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2025년 15,948회의 재난방송을 모니터링한 결과 재난방송 요청 건수가 744건에 달하였고, 실시간 상황관리를 통하여 일일 보고서 및 통계도 작성하고 있음.

- 
1.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방송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
  4.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2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 발생의 예방·대피·구조·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3.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발령(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모습 >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 그런데, 동 내역사업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여야 할 국가의 사무임에도 민간협회(RAPA)에 대한 보조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재난방송이 차질 없이 실시되도록 하는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역할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방미통위가 수행하고 있다는 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sup>26)</sup>에 따라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모든 국민이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내역사업은 국가 고유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sup>27)</sup>에 따른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재정상 지원하는 것인바, 국가의 사무를 민간보조사업 형태로 추진하는 것은 보조금 예산 편성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집행 방식임.
- 따라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운영을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비목을 전환하고 관련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2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 3.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소관

#### 【 일반회계 】

##### (6)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2141-301)

- 성과지표인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역량 향상률’ 측정 시 조사대상 교육 회차와 표본을 체계적으로 선정하거나 사후 가중치를 통하여 보정하는 등 표본의 대표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사업은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정보 제공과 이용자 보호 활동을 수행하고,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 및 지원시스템 운영, 통신품질 현장측정을 통해 이용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역량 강화 및 보호’,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한 이용자 피해 구제 강화’의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동 사업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 19억 4,0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 <2025년도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년 |       |            |            |          |       |             |     | 2026년<br>예산 |
|----------------------------|-------|-------|------------|------------|----------|-------|-------------|-----|-------------|
|                            | 예산액   |       | 전년도<br>이월액 | 이 전 용<br>등 | 예산<br>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br>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방송통신이용자보호환경 조성           | 1,940 | 1,940 | -          | -          | 1,940    | 1,940 | -           | -   | 2,131       |
| ○ 방송통신서비스이용자역량강화 및 보호      | 1,376 | 1,376 | -          | -          | 1,376    | 1,376 | -           | -   | 1,376       |
| ○ 통신분쟁조정제도를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 564   | 564   | -          | -          | 564      | 564   | -           | -   | 755         |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나) 성과지표 측정 방식 개선 필요

- 내역사업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는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정기적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실시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 이 중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은 교육대상을 노년층, 농어민, 일반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청소년의 6개 집단으로 나누고, 집단별 교육 목표인원을 설정한 뒤, 각 집단의 특성에 맞게 모집·양성된 강사단을 활용하여 대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취약계층의 통신서비스 활용 역량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음.

- 2025년 동 교육사업 실시를 위하여 7억 8,110만원이 실집행됨.

### <2025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사업의 실집행 내역>

| 내역사업                        | 실집행내역                                                                                                                                                                                                                                                                                                                                                                                                                                                                                                                                                                                                                                                                                                                                                                                                                                                      |
|-----------------------------|------------------------------------------------------------------------------------------------------------------------------------------------------------------------------------------------------------------------------------------------------------------------------------------------------------------------------------------------------------------------------------------------------------------------------------------------------------------------------------------------------------------------------------------------------------------------------------------------------------------------------------------------------------------------------------------------------------------------------------------------------------------------------------------------------------------------------------------------------------|
| 방송통신서비스<br>이용자 역량강화<br>및 보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67.7백만원</li> <li>-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 811.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콘텐츠 업데이트 : 20×1식=20백만원</li> <li>※ 계층별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최신 사례 개발 및 보급</li> <li>▪ <b>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실시 : 14,198원×55,010명=781.1백만원</b></li> <li>※ 계층별(노령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농어민, 일반인, 청소년 포함) 피해예방 교육</li> <li>▪ 온라인 교육 운영 : 10 x 1식 = 10백만원</li> </ul> </li> <li>- 방송통신서비스 동향 조사 분석 : 59.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보호 국내외 동향 및 이슈조사 : 20×1식=40백만원</li> <li>▪ 보고서 발간 및 배포 : 19.6×1식=19.6백만원</li> </ul> </li> <li>- 이용자 피해예방 및 보호기반 강화 : 403.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보호 업무평가 : 334×1회=334백만원</li> <li>▪ 이용자전용 홈페이지 운영 : 69.6×1식=69.6백만원</li> </ul> </li> <li>- 과금검증체계 관리 및 운영 : 93.4×1식=93.4백만원</li> </ul> |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는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역량 향상률(%)’이 설정되어 있는데, 역량 향상률은 교육 대상자들에게
- ① 서비스 이용 시 중요사항, ② 주요 피해예방·대응법 등 주요 교육 내용에 관한 10개 문항의 설문조사를 교육 전·후로 실시하여 역량점수의 향상 정도를 측정하고 있음.

<2022~2025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4년간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 구분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2025 목표치<br>산출근거                    | 측정산식<br>(또는<br>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br>(또는<br>자료출처)           |
|-----------------------------------|-----|-------|-------|-------|-------|------|-------------------------------------|---------------------------------------------------|----------------------------------|
| 통신서비스<br>피해예방 교육<br>역량 향상률<br>(%) | 목표  | 18    | 18.5  | 19.0  | 19.5  | 20.2 | 최근 3개년 연평균<br>증가율(0.5%p)을<br>고려해 산출 | [(계층별 교육 후<br>역량점수-교육전<br>역량점수)/ 교육전<br>역량점수]*100 | 교육전·후<br>설문조사(10문항)를<br>통해 측정·집계 |
|                                   | 실적  | 18.2  | 18.7  | 19.2  | 19.6  | -    |                                     |                                                   |                                  |
|                                   | 달성도 | 101.1 | 101.1 | 101.1 | 100.5 | -    |                                     |                                                   |                                  |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그런데, 수행기관에서 성과지표 산출을 위한 설문조사 대상 선정 시 전체 교육회차의 교육인원 또는 집단별 구성비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이를 통해 산출된 성과지표가 실제 교육을 통한 전체 교육대상의 역량 향상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구체적으로, 수행기관은 별도의 확률표본추출 절차나 집단별 표본배분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일부 교육회차를 선정하여 해당 회차 교육인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응답한 인원을 그대로 유효표본에 산입한 후 응답자 전체의 역량 향상률을 단순평균하여 성과지표를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러한 방식에 따를 경우, 어느 교육회차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지와 해당 회차 실제 응답자에 따라 유효표본이 결정되는데, 이러한 유효표본은 전체 교육인원의 특성을 충분히 대표하

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산출된 역량 향상률은 단순히 유효 표본의 평균적인 역량 향상 정도를 나타내는 데 그침.

- 실제로, 2025년의 경우 일부 집단에서는 실제 교육인원의 구성비와 설문응답자 대상 유효표본 구성비 사이에서 최대 6.2%p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유효표본의 계층별 구성이 실제 교육인원의 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특정 집단의 성과가 전체 역량 향상률에 과대 또는 과소 반영될 가능성이 있음.

### <2025년 실제 교육 인원 및 유효표본 구성>

(단위: 명, %, %p)

| 구분    | 교육 목표 인원 | 실제 교육 인원 |         | 유효표본수 |         | 구성비 차이 (B-A) |
|-------|----------|----------|---------|-------|---------|--------------|
|       |          |          | 구성비 (A) |       | 구성비 (B) |              |
| 노년층   | 31,010   | 41,854   | 82.6    | 890   | 76.3    | △6.2         |
| 농어민   | 2,600    | 4,583    | 9.0     | 90    | 7.7     | △1.3         |
| 일반인   | 300      | 1,877    | 3.7     | 79    | 6.8     | +3.1         |
| 다문화가정 | 700      | 850      | 1.7     | 32    | 2.7     | +1.1         |
| 장애인   | 500      | 569      | 1.1     | 32    | 2.7     | +1.6         |
| 청소년   | 300      | 971      | 1.9     | 43    | 3.7     | +1.8         |
| 전체    | 35,410   | 50,704   | 100.0   | 1,166 | 100.0   | -            |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따라서 계층별 실제 교육인원 규모와 구성비, 필요 표본 규모 등을 고려해 조사대상 교육회차와 표본을 체계적으로 선정하거나, 실제 교육인원의 집단별 구성비를 반영한 사후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표본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방송통신발전기금 】

### (7)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3251-304)

- 동 사업의 성과지표인 ‘위치정보 응답 성공률’은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에 관한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치기준 충족률, 위치정확도, 위치응답시간 등 위치정보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새로운 성과지표의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사업은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을 365일·24시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구조 요청자 위치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신뢰도 향상’,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안정적 운영’,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제고’의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 사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출연사업 및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구성되며, 2025회계연도 계획액 13억 6,0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 <2025년도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년 |       |            |          |       |             |     | 2026년<br>예산 |
|------------------------------------------------------|-------|-------|------------|----------|-------|-------------|-----|-------------|
|                                                      | 계획액   |       | 전년도<br>이월액 | 계획<br>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br>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    |            |          |       |             |     |             |
| <input type="checkbox"/> 위치정보 활용<br>긴급구조 지원<br>체계 강화 | 1,360 | 1,360 | -          | 1,360    | 1,360 | -           | -   | 1,088       |
| <input type="radio"/> 위치정보 활용<br>플랫폼 신뢰도<br>향상       | 150   | 150   | -          | 150      | 150   | -           | -   | 150         |
| <input type="radio"/> 위치정보 활용<br>플랫폼 안정적<br>운영       | 200   | 200   | -          | 200      | 200   | -           | -   | 200         |
| <input type="radio"/> 긴급구조 위치<br>정보 품질 제고            | 1,010 | 1,010 | -          | 1,010    | 1,010 | -           | -   | 738         |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나) 새로운 성과지표 개발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제고 사업’은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의 안정성과 성능을 높여 긴급구조 목적의 위치정보의 정확도 및 신속도 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동 내역사업 예산(10억 1,000만원)이 동 세부사업 예산(13억 6,000만원)의 74.3%를 차지하고 있음.

-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Location Based Service Platform)은 이동통신사의 민간 자산(Wi-Fi, Access Point(AP)<sup>28)</sup> 정보 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가

28) Access point(AP)는 인터넷 등 네트워크에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장치로, 네트워크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함. 예컨대, 유무선 공유기, 무선랜 장비 등이 해당되며, 기기가 연결된 AP의 고유 정보와 수신 신호 강도 등을 활용해 GPS가 닿지 않는 실내에서도 기기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Wi-Fi 측위 기술에 핵심적으로 사용됨.

구조대상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하면 이를 제공함.

-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위치정보 응답 성공률”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긴급구조기관의 위치조회 요청 건수 대비 위치정보가 회신된 비율에 해당하여, 위치정보 제공 여부 외에 회신된 위치정보의 정확성이나 제공 속도 등 품질에 관한 성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참고로, 피출연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25년 동 사업 결과보고서에서는 위치정보의 품질을 위치기준 충족률, 위치정확도, 위치응답시간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응답 성공률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을 위치정보 품질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 지표>

| 구 분                 | 측위기술  | 위치기준 충족률(%)   | 위치정확도(m)      | 위치응답시간(초)   |
|---------------------|-------|---------------|---------------|-------------|
| 2024년<br>→<br>2025년 | 기지국   | -             | 25.04 → 21.97 | 1.37 → 1.86 |
|                     | GPS   | 99.02 → 99.19 | 12.72 → 12.31 | 1.68 → 2.41 |
|                     | Wi-Fi | 98.91 → 99.38 | 18.74 → 17.06 | 2.42 → 2.41 |
| 전년 대비<br>개선 비율      | 기지국   | -             | 12.3%         | -35.8%      |
|                     | GPS   | 0.2%          | 3.2%          | -43.5%      |
|                     | Wi-Fi | 0.5%          | 9.0%          | 0.4%        |

자료: 「2025년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결과보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따라서,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 관련 요소는 응답 성공률 외에도 위치기준 충족률, 위치정확도, 위치응답시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음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포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4. 시장조사심의관 소관

### 【 일반회계 】

#### (8)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2141-302)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불편광고 삭제제한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용도로 교부받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방미통위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할 업무를 보조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유사한 주제에 관한 조사를 여러 내역사업에서 중복 수행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 사업은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시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송통신 시장 불공정행위 및 금지행위 모니터링, 현황조사,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등을 실시하려는 사업임.
  - 동 사업의 2025회계연도 예산액 27억 500만원 중 26억 8,700만원(99.3%)이 집행되었고, 1,800만원은 불용되었음.
- 동 사업은 ①방송통신시장 서비스 분야별 시장 모니터링 실시, ②인터넷플랫폼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 ③모바일 앱 결제 피해 예방 및 이용자보호, ④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⑤

방송통신시장 상시조사 분석체계 운영의 5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3개 내역사업(①,③,④)은 민간보조사업, 1개 내역사업(②)은 출연사업, 1개 내역사업(⑤)은 방미통위 직접 수행 사업임.

### <2025회계연도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년 |       |            |          |          |                  |            |     | 2026년<br>예산 |
|------------------------------------|-------|-------|------------|----------|----------|------------------|------------|-----|-------------|
|                                    | 예산액   |       | 전년도<br>이월액 | 이전용<br>등 | 예산<br>현액 | 집행액<br>[실집행액]    | 차년도<br>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    |            |          |          |                  |            |     |             |
| □ 방송통신시장<br>조사분석                   | 2,705 | 2,705 | -          | -        | 2,705    | 2,687<br>[2,619] | -          | 18  | 2,401       |
| ○ 방송통신시장<br>서비스분야별<br>시장모니터링<br>실시 | 1,502 | 1,502 | -          | -        | 1,502    | 1,502<br>[1,483] | -          | -   | 1,298       |
| ○ 인터넷플랫폼<br>시장 공정경쟁<br>환경조성        | 517   | 517   | -          | -        | 517      | 517<br>[468]     | -          | -   | 427         |
| ○ 모바일 앱 결<br>제 피해예방<br>및 이용자보호     | 499   | 499   | -          | -        | 499      | 499<br>[498.9]   | -          | -   | 417         |
| ○ 인터넷 불편<br>광고 금지행위<br>모니터링        | 62    | 62    | -          | -        | 62       | 62<br>[61.8]     | -          | -   | 100         |
| ○ 방송통신시장<br>상시조사 분석<br>체계 운영       | 125   | 125   | -          | -        | 125      | 107              | -          | 18  | 159         |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나) 보조금을 방미통위 자체 사무에 활용하는 행위 시정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은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인터넷 불편광고(플로팅 광고) 삭제제한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행점검 등을 통해 이용자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 동 내역사업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하 “진흥협회”라 함)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흥협회는 교부받은 6,200만원 중 모니터링 용역비로 2,990만원, 자료 구매비로 220만원, 법률자문비로 450만원, 경상비로 2,520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6,180만원(99.7%)을 집행하였음.

○ 동 내역사업은 불편광고(삭제제한행위) 관련 금지행위<sup>29)</sup> 위반

29)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인터넷 불편광고(플로팅 광고) 삭제제한행위를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로 구체화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 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 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영 제42조제1항 관련)**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5호 중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사.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진흥협회가 보조사업자로서 수행한 법률자문 일부가 동 내역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 진흥협회가 동 내역사업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중 법률자문비는 복수의 법무법인에 불편광고 모니터링 관련 법률적 판단과 신규 유형 불편광고 분석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것임.

#### < 최근 3년간 동 내역사업의 법률자문비 집행내역 >

| 연 도   | 수령인명         | 금액 (원)    | 집행 사유          |
|-------|--------------|-----------|----------------|
| 2023년 | 법무법인 ○○ 등 3건 | 6,600,000 | 사업 관련 법률 검토    |
| 2024년 | 법무법인 △△ 외 2건 | 4,200,000 | 모니터링 결과 법률 자문비 |
| 2025년 | 법무법인 ◇◇      | 1,500,000 | 모니터링 결과 법률 자문비 |
|       | 법무법인 □□      | 1,500,000 | 모니터링 결과 법률 자문비 |
|       | 법무법인 ♡♡      | 1,500,000 | 모니터링 결과 법률 자문비 |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6.)

- 2023년에는 특정 광고가 플로팅 광고 삭제제한행위에 해당하여 제재가능한지 여부를, 2024년에는 삭제제한행위 유사 광고에 대한 금지행위 적용 가능성 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으나, 2025년의 경우 법 적용 범위에 대한 의견조회 외에도 ‘신규 유형의 불편광고를 금지행위에 포섭하기 위한 시행령 및 고시의 적절한 개정 방향’에 대하여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음.

6)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 이는 불편광고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진흥협회가 사업과 무관한 주제의 법률자문을 위해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sup>30)</sup>를 위반한 것이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sup>31)</sup>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사업비로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sup>32)</sup>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해당 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21조(사업비 불인정)** 주무부서 또는 검증기관은 사업비 정산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4.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3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한편, 방미통위는 보조사업자인 진흥협회가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자체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여야 할 법률자문비를 보조사업자에 교부한 보조금으로 집행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중대한 문제가 있음.
- 진흥협회의 법률자문 요청서에는 ‘주무부처 요청으로 법률자문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 자문이 보조사업자의 사업상 필요가 아닌 방미통위의 행정상 목적을 위해 추진된 것임을 방증함.
- 동 세부사업 중 방미통위가 직접 수행하는 ‘방송통신시장 상시 조사분석체계 운영’ 내역사업에는 법률자문비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수용비(210-01)가 2,700만원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 체계 개편에 필요한 법령 및 고시 제·개정에 관한 사안을 보조사업자의 사업비로 수행하여야 할 당위성도 인정하기 어려움.

# <방송통신시장 상시조사 분석체계 운영 내역사업 비목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년 |     |            |          |          |     |            |     | 2026년<br>예산 |
|-----------------------|-------|-----|------------|----------|----------|-----|------------|-----|-------------|
|                       | 예산액   |     | 전년도<br>이월액 | 이전용<br>등 | 예산<br>현액 | 집행액 | 차년도<br>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  |            |          |          |     |            |     |             |
| ○ 방송통신시장 상시조사 분석체계 운영 | 125   | 125 | -          | -        | 125      | 107 | -          | 18  | 159         |
| -일반수용비 (210-01)       | 27    | 27  | -          | -        | 27       | 27  | -          | -   | 65          |
| -국내여비 (220-01)        | 29    | 29  | -          | -        | 29       | 23  | -          | 6   | 29          |
| -국외업무여비 (220-02)      | 5     | 5   | -          | -        | 5        | 4   | -          | 1   | 5           |
| -특정업무경비 (250-03)      | 64    | 64  | -          | -        | 64       | 53  | -          | 11  | 60          |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방미통위는 방미통위 자체의 일반수용비나 정책연구용역 수행 등 법률과 지침에 부합하는 정당한 예산집행 방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에게 교부 목적을 벗어나는 용도로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보임.

○ 따라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향후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방미통위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할 업무를 보조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sup>33)</sup>

33) 참고로, 2024회계연도 방미통위 소관 결산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사업 내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 예산으로 ‘사업 근거 법령 개정방향’에 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한 부분에 대하여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서 벗어난 보조금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이 요구된 바 있음.

#### 다) 유사한 주제의 실태조사 중복 수행 지양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인터넷플랫폼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은 인터넷플랫폼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고자 앱마켓과 인터넷 플랫폼 등에 대한 실태조사, 현황 분석 및 제도 개선 필요사항 도출을 지원하려는 것임.
- 동 내역사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하 “진흥원”이라 함)에 대한 출연사업으로,진흥원은 출연받은 사업비 5억 1,700만원 중 4억 6,800만원(90.5%)을 집행하였음.
- 동 사업의 또다른 내역사업인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 보호’는 모바일 앱 이용 및 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정보제공,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동 내역사업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으로, 협회는 교부받은 4억 9,900만원 중 4억 9,890만원(99.9%)을 집행하였음.
- 진흥원은 인터넷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①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앱 마켓 실태조사”라 함)와 ②인터넷플랫폼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플랫폼 실태조사”라 함)를 실시하

고 있으며, 협회는 앱 결제 사업의 일환으로 ③앱 결제 이용 현황 조사·분석(이하 “앱 결제 조사”라 함)을 실시하고 있음.

### < 실태조사 목적 및 내용 비교 >

| 조사명       | 조사 목적                                                                        | 조사 대상                    | 조사 항목                                   | 예산 집행 내역                                     |
|-----------|------------------------------------------------------------------------------|--------------------------|-----------------------------------------|----------------------------------------------|
| 앱 마켓 실태조사 |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는 모바일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실태조사 및 데이터 수집을 통해 정책적 근거자료 마련 | 앱 마켓 사업자 (4개)            | 사업자 재무 현황, 이용약관                         | - 실태조사 실시 (2억 9,200만원)<br>- 연구반 운영 (2,900만원) |
|           |                                                                              | 앱 마켓 이용사업자(개발자) (1,200개) | 앱 심사 지연, 등록 거부 경험                       |                                              |
|           |                                                                              | 앱 마켓 최종이용자(소비자) (3,000명) | 앱 결제·환불 불편 경험                           |                                              |
| 플랫폼 실태조사  | 배달, 숙박, 스트리밍 등 다양한 인터넷 플랫폼 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               | 플랫폼 이용사업자 (2,000개)       | 계약, 수익정산 과정 불공정                         | - 실태조사 실시 (9,700만원)<br>- 연구반 운영* (2,900만원)   |
|           |                                                                              | 플랫폼 최종이용자 (2,000명)       | 플랫폼 이용 과정 불편 경험                         |                                              |
| 앱 결제 조사   | 모바일 앱 결제 동향과 피해 사례 등 현황을 파악하여 이용자 피해 및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안 마련                       | 모바일 앱 이용자 (1,300명)       | 모바일 앱 결제 수단, 취소/환불 관련 피해 현황, 앱 이용 불편 경험 | - 조사분석 실시 (3,200만원)                          |

※ 연구반은 앱 마켓 실태조사와 플랫폼 실태조사를 모두 수행하여 중복 작성되었음.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7.)

○ 그런데 위 3가지 조사는 유사한 주제의 조사·분석을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 ‘앱 마켓 실태조사’는 앱 마켓에서 유료 앱 및 콘텐츠 최종이용자를 대상으로 결제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은 사례, 환불 신청 결과와 과정상 불편 사례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sup>34)</sup>

34) 「2024년도 앱 마켓 시장 실태조사 주요결과」, 방통위 (2025.4.)

‘플랫폼 실태조사’ 또한 배달, 숙박, 스트리밍, 웹툰 등 인터넷 플랫폼의 최종이용자를 대상으로 환불 과정의 불편 이유를 조사하고 있으며,<sup>35)</sup>

‘앱 결제 조사’에서도 모바일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앱 결제 관련 불편사항 및 결제취소·환불 시 불만사항을 조사하였음.<sup>36)</sup>

○ 이들 조사는 세부 조사 목적이나 조사 대상 구분 방식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근본적으로 모바일 앱 및 플랫폼의 최종이용자(소비자)를 대상으로 중복 조사가 이뤄지며 조사 설계 및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이 중복 소모되는 측면이 있음.

○ 이처럼 유사한 주제의 실태조사를 별도의 출연·보조사업으로 분산 집행하는 것은 예산 집행상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유사한 주제에 관한 조사를 여러 내역사업에서 중복 수행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35) 「2025 인터넷플랫폼 시장 주요이슈 도출 및 분석」, 방미통위, 한국인터넷진흥원 (2025.12.)

36) 「'25년도 모바일 앱결제 피해 동향조사 보고서」,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2025.12.)

## 5. 방송미디어진흥국 소관

### 【 방송통신발전기금 】

#### (9) 디지털콘텐츠 코리아 펀드(1131-308)

- ‘디지털콘텐츠 코리아 펀드’ 사업은 연례적인 민간 자금 유치 실패와 펀드 조성 순연이 발생하고 있는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민간 중심 콘텐츠 투자 생태계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사업이 국내 콘텐츠 IP 확보 등 당초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디지털콘텐츠 코리아 펀드’ 사업은 글로벌 콘텐츠·미디어 시장을 공략할 글로벌 콘텐츠·미디어 기업의 전략적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 제약이 적은 새로운 민간 중심의 콘텐츠·미디어 전용 펀드를 조성하려는 사업임.
- 동 사업은 출자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계획액 50억원 전액이 출자되었음.

## <2025회계연도 디지털콘텐츠 코리아 펀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년 |       |                |            |       |                |       | 2026년<br>계획 |
|---------------------|-------|-------|----------------|------------|-------|----------------|-------|-------------|
|                     | 계 획 액 |       | 전 년 도<br>이 월 액 | 계 획<br>현 액 | 지 출 액 | 차 년 도<br>이 월 액 | 불 용 액 |             |
|                     | 당 초   | 수 정   |                |            |       |                |       |             |
| □ 디지털 콘텐츠<br>코리아 펀드 | 5,000 | 5,000 | -              | 5,000      | 5,000 | -              | -     | 500         |
| ○ 콘텐츠 전략 펀드<br>출자   | 5,000 | 5,000 | -              | 5,000      | 5,000 | -              | -     | 500         |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나) 정책목적 달성 위하여 사업관리 철저 필요

- 동 사업은 그간 벤처기업 대상 소규모 투자라는 콘텐츠 분야 펀드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자제한 없이 시장수요에 기반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자 2024년 신설되었음.
-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sup>37)</sup>는 5년간 총 550억원의 정부 재정을 펀드에 출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재원(950억원)과 정책금융·민간자금(1,900억원)을 활용해 총 3,400억원 규모로 모펀드를 조성하고, 추가로 민간자금을 모집하여 최종 1조원대 규모의 민간 중심 펀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37) 2025년 10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동 사업 소관 부처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됨

## <연도별 콘텐츠전략펀드 조성 계획안('24~'28년)>

(단위: 억원)

| 구 분         |                            | '24년  | '25년  | '26년  | '27년 | '28년 | 계      |
|-------------|----------------------------|-------|-------|-------|------|------|--------|
| 모<br>편<br>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br>(舊과학기술정보통신부) | 350   | 50    | 50    | 50   | 50   | 550    |
|             | 문화체육관광부                    | 450   | 150   | 150   | 100  | 100  | 950    |
|             | 정책금융·민간                    | 1,200 | 200   | 200   | 150  | 150  | 1,900  |
|             | 소 계                        | 2,000 | 400   | 400   | 300  | 300  | 3,400  |
| 자<br>편<br>드 | 모펀드                        | 2,000 | 400   | 400   | 300  | 300  | 3,400  |
|             | 민간자금                       | 4,000 | 800   | 800   | 600  | 600  | 6,800  |
|             | 합 계                        | 6,000 | 1,200 | 1,200 | 900  | 900  | 10,200 |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그러나, 실제 사업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정부의 당초 계획과 달리 민간 자금 유치가 극도로 부진하여 펀드 조성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있음.

- 2024회계연도에는 정부 재정 800억원(과기정통부 350억원 + 문체부 450억원)이 정상 출자되었으나, 민간출자가 부진하여 펀드 조성 규모가 6,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감소하였음.

## <2024회계연도 펀드 조성액 변경 현황>

(단위: 억원)

| 모펀드 |            | 기타<br>민간 | 합계    | → | 모펀드 |            | 기타 민간    |       | 합계    |
|-----|------------|----------|-------|---|-----|------------|----------|-------|-------|
| 정부  | 정책금융<br>민간 |          |       |   | 정부  | 정책금융<br>민간 | 산업<br>은행 | 민간    |       |
| 800 | 1,200      | 4,000    | 6,000 |   | 800 | 600        | 200      | 2,400 | 4,000 |

- 2025회계연도에도 정부 재정 200억원(과기정통부 50억원 + 문체

부 150억원)이 출자되었으나, 민간 자금이 전혀 유치되지 못하면서 펀드 조성 규모가 200억원에 그치고 말았음.

### <2025회계연도 펀드 조성액 변경 현황>

(단위: 억원)

| 모펀드 |            | 기타<br>민간 | 합계  | → | 모펀드 |            | 기타<br>민간 | 합계  |
|-----|------------|----------|-----|---|-----|------------|----------|-----|
| 정부  | 정책금융<br>민간 |          |     |   | 정부  | 정책금융<br>민간 |          |     |
| 200 | 200        | 400      | 800 |   | 200 | 0          | 300      | 500 |

- 2024회계연도에 조성된 전략펀드(모펀드) 1호가 사업 지연으로 모펀드 결성이 2025년 3월 완료되었으며, 자펀드 결성은 2025년 9월(블라인드 펀드<sup>38)</sup>)과 2025년 10월(프로젝트 펀드<sup>39</sup>)에 시작되어 현재도 수시모집 중이며,  
2025회계연도에 조성된 전략펀드(모펀드) 2호 또한 계획한 2025년보다 지연된 2026년 7월에야 자펀드가 결성되었음.

- 실제 투자는 자펀드 운용사 선정, MOU 체결을 거쳐 자펀드가 결성된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2024·2025년 모두 해당 회계연도 기금 투입의 효과가 연내 발생하지 못한 것임.

38) 펀드 결성 후 투자대상을 결정하는 펀드

39) 투자대상 선정 후 결성하는 펀드

**<콘텐츠전략펀드 자펀드 운용사 선정 및 결성 시점 >**

| 구분 |            | 펀드명                               | 모집<br>공고 | 운용사<br>선정 | 펀드<br>결성 |
|----|------------|-----------------------------------|----------|-----------|----------|
| 1호 | 블라인드<br>펀드 | 아이비케이에이티유콘텐츠미디어테크사모투자<br>합자회사     | 2025.2.  | 2025.4.   | 2025.12. |
|    |            | 미시간글로벌K콘텐츠투자조합                    |          | 2025.4.   | 2025.12. |
|    |            | 사우스뱅크 디스커버리 K-콘텐츠미디어<br>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2025.6.   | 2025.10. |
|    |            | 유니온콘텐츠플러스투자조합                     |          | 2025.6.   | 2025.12. |
|    | 프로젝트<br>펀드 | 푸른 엠더블유 시네마 콘텐츠<br>신기술투자조합 1호     | 2025.2.  | 2025.9.   | 2025.9.  |
|    |            | 에이티유킴처테크6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 2025.12.  | 2026.1.  |
|    |            | 한화-비엔케이 신기술투자조합                   | 2026.2.  | 2026.5.   | 2026.5.  |
| 2호 |            | 에스엠-코로프라 케이콘텐츠 투자조합               | 2025.11. | 2025.12.  | 2026.7.  |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7.)

○ 이에 2026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시 재정  
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동 사업 지출계획이 당초 목표(50억원) 대  
비 90% 삭감된 5억원에 그치며 올해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었음.

- 방미통위에 따르면, 올해 5월 자펀드 운용사 선정 공고가 개  
시되어 심사가 진행 중이며, 8월 중 운용사 선정 예정임.

## <2026회계연도 펀드 조성액 변경 현황>

(단위: 억원)

| 모펀드 |            | 기타<br>민간 | 합계  |   | 모펀드 |            | 기타<br>민간 | 합계 |
|-----|------------|----------|-----|---|-----|------------|----------|----|
| 정부  | 정책금융<br>민간 |          |     |   | 정부  | 정책금융<br>민간 |          |    |
| 200 | 200        | 400      | 800 | → | 155 | 0          | 진행<br>예정 | 미정 |

- 동 사업은 펀드 결성 지연 등과 관련하여 사업 첫 해인 2024 회계연도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국회로부터 다수의 시정이 요구된 바 있음.

## <콘텐츠전략펀드 관련 국회 시정요구 현황>

| 시정요구사항                                                                                                                               | 종류    |
|--------------------------------------------------------------------------------------------------------------------------------------|-------|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규사업 추진 시 사업절차를 고려해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펀드 조성규모 달성도·투자실적(투자기업의 성장성과, 고용창출 등) 산출·결과지표를 보완하여 성과관리를 강화할 것                      | 제도 개선 |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제작사가 IP(지적재산권)를 확보해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운용사 가이드라인에 명시할 것                                                                  | 주의    |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펀드 결성 및 투자에 대한 집행을 관리할 것                                                                                               | 주의    |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운용사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펀드 운용기금이 매년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것                                                                        | 시정    |
| ○ 정부는 펀드 출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펀드의 단계적 조성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이 책정되도록 하고, 기 조성된 펀드의 투자실적 및 투자기간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방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제도 개선 |

- 방미통위는 글로벌 콘텐츠·미디어 환경변화에 시의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진출 목적의 콘텐츠·플랫폼·IP·프로젝트 등 미래 투자 활성화 지원을 통해 수익 창출과 기업 성장을 견인하고 양

질의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라는 정부의 출자 목적 달성을 위하여 민간 투자자의 적극적 투자 유도, 자펀드 조성 등 펀드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그러나 현행과 같이 콘텐츠전략펀드의 민간자금 유치에 지속적으로 난항을 겪는 것은 주식시장과 타 정책펀드<sup>40)</sup> 등 대체 투자 수단 대비 수익률 프리미엄의 부족, 위험도가 높은 영화·드라마 등 콘텐츠 분야에 대한 민간 출자자의 참여 유인이 떨어지는 구조적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아울러, 동 사업은 문체부가 운용하는 모태펀드(문화계정) 등 타 정책펀드와 사업 목적 및 지원 대상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sup>41)</sup> 최근 콘텐츠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펀드의 존속기한이 비교적 장기(10~15년)인 모펀드 출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 자펀드 대비 민간자금 유치 계획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이처럼 구조적 한계와 성과 부진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동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다음의 부작용이 우려됨.

- 첫째, 최근 미디어·콘텐츠 시장은 글로벌 OTT 및 대형 제작

---

40) 국민성장펀드 등

4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총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59p

사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sup>42)</sup> 제작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정책펀드 추진이 오히려 자발적인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t)를 유발할 수 있음.

- 둘째, 적정 수준의 민간자금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가 적기에 집행되지 못할 경우, 이미 출자된 수백억원의 정부 재정이 10~15년의 펀드 존속기간 동안 장기간 유흡화되면서 시급한 타 사업에 활용되지 못하는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게 됨.

○ 따라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연례적인 민간 자금 유치 실패로 펀드 결성이 지연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된 동 사업에 대하여, 민간 중심 콘텐츠 투자 생태계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사업이 국내 콘텐츠 IP 확보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42) ‘케이팝 데몬 헌터스’, ‘폭삭 속았수다’, ‘참교육’ 등

## (10) 디지털미디어산업 육성기반 구축(정보화)(1140-301)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업 이관에 따른 사업 내용 변화를 반영하여, 사업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도록 동 세부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디지털미디어산업 육성기반 구축’ 사업은 유료방송, OTT 등 미디어분야 시장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OTT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등 디지털미디어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사업임.
  - 동 사업은 통계작성 또는 실태조사를 수행하려는 것으로, 조사 종류에 따라 민간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또는 출연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2025회계연도 계획액 10억 9,600만원 중 9,800만원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에 보조금으로, 2억 6,200만원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사업비로, 7억 3,600만원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출연금으로 지급되어 전액 집행되었음.
- 동 사업은 동일 명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디지털미디어실태조사’ 사업이 2025.10.1.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sup>43)</sup>된 것이며, 이관되

지 아니한 내역사업인 ‘K-OTT 확산 지원’ 사업은 여전히 과기  
정통부가 수행하고 있음.

## <2025회계연도 디지털미디어산업 육성기반 구축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년 |       |            |            |                  |            |     | 2026년<br>계획 |
|---------------------------|-------|-------|------------|------------|------------------|------------|-----|-------------|
|                           | 예산액   |       | 전년도<br>이월액 | 계 획<br>현 액 | 지출액<br>[실집행액]    | 차년도<br>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    |            |            |                  |            |     |             |
| □ 디지털미디어<br>산업 육성기반<br>구축 | 1,096 | 1,096 | -          | 1,096      | 1,096<br>[1,056] | -          | -   | 930         |
| ○ 디지털미디어<br>실태조사          | 1,096 | 1,096 | -          | 1,096      | 1,096<br>[1,056] | -          | -   | 930         |
| - 민간경상보조<br>(320-01)      | 98    | 98    | -          | 98         | 98<br>[98]       | -          | -   | 98          |
| - 민간위탁<br>(320-02)        | 262   | 262   | -          | 262        | 262<br>[253]     | -          | -   | 832         |
| - 사업출연금<br>(350-02)       | 736   | 736   | -          | 736        | 736<br>[705]     | -          | -   | -           |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나) 사업 목적 및 내용에 부합하도록 사업명 변경 필요

- 동 사업의 방미통위 소관 유일한 내역사업인 ‘디지털미디어실태조사’는 방송·미디어산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으로서, 국가승인통계 3건(방송산업 실태조사, 스마트미디어산업 실태조사, 방송통신광고비조사) 및 방송 관계 법령에 따른 유료방송 실태조사 2건(가입자 수 조사·검증, 품질평가) 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43) 2025년 10월 1일, 동 사업이 이관되며 계획액 10억 9,600만원 중 과기정통부가 지출하고 남은 2억 3,900만원의 소관이 과기정통부에서 방미통위로 변경되었고, 방미통위는 이를 전액 지출 완료하였음.

- ‘디지털미디어산업 육성기반 구축’ 사업은 산업 전반의 현황을 파악하는 ①‘디지털미디어실태조사’와 국내 OTT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②‘K-OTT 확산 지원’의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25년 10월 정부조직 개편 및 소관 조정에 따라 ①‘디지털미디어실태조사’ 내역사업만 방미통위로 이관됨에 따라 동 사업은 ‘통계·조사 전문 사업’으로 그 성격이 완전히 재편되었음.
- 방미통위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근본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과기정통부 소관 세부사업명인 ‘디지털미디어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그대로 유지·사용하고 있음.
- 세부사업명은 국회 예·결산 심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해당 예산이 어느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관문이 되는데, 현행과 같이 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목적의 내역사업이 제외되고 국가승인통계 조사 및 법정 실태조사 위주로 사업이 개편되었음에도 기존의 사업명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사업의 명칭(형식)과 내용(실질) 간 차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 이에 대하여 방미통위는 실태조사 외에 디지털미디어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위한 신규 내역사업 발굴 등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명을 유지한 것이며, 추후 사업 내용을 고려하여 기존 방미통위 세부사업에 편입하거나 세부사업명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 따라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업 이관에 따른 사업 내용 변화를 반영하여, 국가승인통계 및 법정 실태조사라는 사업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도록 동 세부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1)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조성(정보화)(2431-302)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동 사업과 사업 목적 및 수행 방식이 사실상 동일한 ‘방송사업등 허가심사지원’ 사업을 통합하고, 동 사업의 집행 재원을 일반회계로 이관함으로써 사업 수행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사업은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 및 권익을 증진하려는 사업임.
  - 동 사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계획액 1억 7,000만원 중 9,570만원(56.3%)이 지출되었고, 7,450만원이 불용되었음.
- 동 사업은 동일 명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방송·통신사업 심사 지원’ 중 방송에 관한 부분인 ‘방송사업 허가심사 지원’이 2025년 10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sup>44)</sup>된 것이며, 이관되지 아니한 7개 내역사업<sup>45)</sup>과 통신사업 인가 등 심사지원 내역사업은 여전히 과기정통부가 수행하고 있음.

44) 2025년 10월 1일, 동 사업이 이관되며 계획액 1억 7,020만원 중 과기정통부가 지출하고 남은 7,800만원의 소관이 과기정통부에서 방미통위로 변경되었으나, 방미통위는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하여 4건(위성방송 재허가 1건, SO 재허가 1건, RO 재허가 2건)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7,450만원을 불용하였음.

45) ①전기통신번호관리체제 운영, ②회계정보분석시스템 개선·운영, ③전기통신사업자 회계자료 검증조사, ④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및 접속원가 검증·조사, ⑤합리적인 통신소비 환경조성, ⑥최적요금제 추천서비스 활성화, ⑦통신사업 인가 등 심사지원

## <2025회계연도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년 |       |            |          |      |            |      | 2026년<br>계획 |
|-----------------------------|-------|-------|------------|----------|------|------------|------|-------------|
|                             | 계획액   |       | 전년도<br>이월액 | 계획<br>현액 | 지출액  | 차년도<br>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    |            |          |      |            |      |             |
| □ 공정경쟁 및 이<br>용자보호 환경<br>조성 | 170.2 | 170.2 | -          | 170.2    | 95.7 | -          | 74.5 | 170.2       |
| ○ 방송사업 허가<br>심사 지원          | 170.2 | 170.2 | -          | 170.2    | 95.7 | -          | 74.5 | 170.2       |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나) 유사 사업과 통합 및 일반회계로 이관 필요

- 동 사업의 방미통위 소관 유일한 내역사업인 ‘방송사업 허가 심사지원’은 유료방송사업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IPTV),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에 대한 허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PP)에 대한 승인을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 <방송사업 허가심사 지원 내역사업 비목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년 |       |                |            |       |                |       | 2026년<br>계획 |
|----------------------|-------|-------|----------------|------------|-------|----------------|-------|-------------|
|                      | 계 획 액 |       | 전 년 도<br>이 월 액 | 계 획<br>현 액 | 지 출 액 | 차 년 도<br>이 월 액 | 불 용 액 |             |
|                      | 당 초   | 수 정   |                |            |       |                |       |             |
| ○ 방송사업 허가<br>심사 지원   | 170.2 | 170.2 | -              | 170.2      | 95.7  | -              | 74.5  | 170.2       |
| - 일반수용비<br>(210-01)  | 103   | 103   | -              | 103        | 80.9  | -              | 22.1  | 103         |
| - 임차료<br>(210-07)    | 32.8  | 32.8  | -              | 32.8       | 4.8   | -              | 28    | 32.8        |
| - 국외업무여비<br>(220-02) | 7.3   | 7.3   | -              | 7.3        | -     | -              | 7.3   | 7.3         |
| - 특정업무경비<br>(250-03) | 27.2  | 27.2  | -              | 27.2       | 10.0  | -              | 17.2  | 27.2        |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승인·등록에 관한 사항은 「방송법」 제9조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제18조에 규정되어 있음.

-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제1항), 위성방송사업자(제2항), SO·RO(제3항)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제11항)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제5항 본문)는 등록 또는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고려하여 종편PP<sup>46)</sup>/보도PP<sup>47)</sup>/홈쇼핑PP<sup>48)</sup>(제5항 단서)는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음악유선방송사업자(제5항), 전광판방송사업자(제5항) 및 전송망사업자

46)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7)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8)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10항)는 등록해야 함.

- 아울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제4조)는 방미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CP)(제18조)는 방미통위에 등록해야 함.

○ 종전에는 유료방송사업자(위성방송, SO·RO, IPTV 제공사업자)의 허가, 홈쇼핑PP·일반PP 및 IPTV 콘텐츠사업자(CP)의 승인·등록·신고, 전광판·음악유선·전송망사업자의 등록 권한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었으나, 2025.10. 방미통위 출범과 함께 허가·승인·등록권자가 방미통위로 일원화되었음.

#### < 방송사업자 등의 허가·승인·등록 제도 >

| 근거<br>법률 | 사업자 분류        |          | 허가·승인·<br>등록 | 허가·승인·등록권자 |       |
|----------|---------------|----------|--------------|------------|-------|
|          |               |          |              | 개정 전       | 개정 이후 |
| 방송법      | 방송<br>사업자     | 지상파      | 허가           | 방통위        | 방미통위  |
|          |               | 종합유선(SO) | 허가           | 과기정통부장관    | 방미통위  |
|          |               | 위성       | 허가           |            |       |
|          |               | PP       | 중편/보도        | 방통위        | 방미통위  |
|          |               |          | 홈쇼핑          | 과기정통부장관    | 방미통위  |
|          |               |          | 그 외          | 과기정통부장관    | 방미통위  |
|          |               | 공동체라디오   | 허가           | 방통위        | 방미통위  |
|          |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          | 허가           | 과기정통부장관    | 방미통위  |
|          | 음악유선방송사업자     |          | 등록           | 과기정통부장관    | 방미통위  |
|          | 전광판방송사업자      |          | 등록           |            |       |
|          | 전송망사업자        |          | 등록           |            |       |
| IPTV법    | IPTV          | 제공사업자    | 허가           | 과기정통부장관    | 방미통위  |
|          |               | 콘텐츠사업자   | 승인           |            |       |

○ 이에 따라 종전 과기정통부가 방송사업자 등의 허가·승인·등록·신고 심사 지원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수행하던 동 사업 역시 방미통위로 이관되었음.

○ 한편, 방미통위는 기존 보유 권한이던 지상파·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와 종편PP·보도PP에 대한 허가·승인(재허가·재승인) 심사 지원을 위하여 일반회계를 통해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 지원(7131-306)’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음.

- 해당 사업의 내역사업인 ‘방송사업 허가심사 지원’과 ‘방송사업 재허가·재승인 이행실적 점검’은 지상파·종편PP에 대한 허가·승인과 재허가·재승인을 위한 심사위원회와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한 것임.

## <2025회계연도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 지원(7131-306)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년 |     |            |          |          |     |            |     | 2026년<br>예산 |
|------------------------|-------|-----|------------|----------|----------|-----|------------|-----|-------------|
|                        | 예산액   |     | 전년도<br>이월액 | 이전용<br>등 | 예산<br>현액 | 집행액 | 차년도<br>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추경  |            |          |          |     |            |     |             |
| □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 지원       | 185   | 185 | -          | ± 6      | 185      | 100 | -          | 85  | 205         |
| ○ 방송사업 허가심사 지원         | 118   | 118 | -          | △ 6      | 112      | 42  | -          | 70  | 118         |
| ○ 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 지원      | 37    | 37  | -          | -        | 37       | 34  | -          | 3   | 37          |
|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심사 지원   | 8     | 8   | -          | -        | 8        | 8   | -          | 8   | 8           |
| ○ 방송사업 재허가·재승인 이행실적 점검 | 22    | 22  | -          | + 6      | 28       | 24  | -          | 4   | 42          |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사업의 내역사업과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 지원’ 사업의 2개 내역사업은 ①사업 목적이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승인(재허가·재승인) 등의 심사 지원으로 동일하고, ②사업 수행방식 역시 심사위원회 운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2개 사업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은 사업 간 칸막이를 초래하여 예산 집행과 관리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아울러, 정부조직 및 권한이 방미통위로 일원화된 이상 동일한 성격의 심사 지원 사업을 일반회계와 방발기금으로 재원을 달리하여 추진할 합리적 당위성도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사업 통합 시 일반회계로의 이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도 재정운용·지출 혁신 추진 계획으로서 지원대상·전달체계가 유사한 사업의 통합 관리로 재정사업 효율화를 추구하고, 기금 건전성 제고방안으로서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특히,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시장 축소로 방발기금 부담금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sup>49)</sup>하고 있으며, 방발기금의 자산

---

49) (2023년) 6,443억원 → (2024년) 5,784억원 → (2025년) 5,650억원

대비 부채 비율이 391.4%에 달하여 부채 관리의 필요성이 지적<sup>50)</sup>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에도 기금 지출 효율화를 위해 동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이에 대하여 방미통위는 동 사업이 일반회계의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 지원’ 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사업이며, 향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장기적으로 사업을 통합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 따라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업 목적 및 수행 방식이 사실상 동일한 동 사업과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지원’ 사업을 통합하고, 동 사업의 집행 재원을 일반회계로 이관함으로써 사업 수행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50) 2025회계연도 기금존치 평가보고서, 기획예산처(2026.5.), 31p

## 6. 방송기반국 소관

### 【 방송통신발전기금 】

#### (12) 미디어다양성 증진(3132-301)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미디어다양성 증진’ 사업은 「방송법」 제69조의2에 따른 시청 점유율 제한 규제<sup>51)</sup>의 근거자료로 사용되는 방송사업자의 시청 점유율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산정하고, 다양한 매체에 대한 TV시청기록을 조사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에 대한 민간보조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계획액 32억 9,000만원 전액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교부되었음.

#### <2025회계연도 미디어다양성 증진 결산 현황>

51) 「방송법」

제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 ①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년 |       |                |            |                  |                |       | 2026년<br>계획 |
|-------------------------------------|-------|-------|----------------|------------|------------------|----------------|-------|-------------|
|                                     | 계 획 액 |       | 전 년 도<br>이 월 액 | 계 획<br>현 액 | 지 출 액<br>[실집행액]  | 차 년 도<br>이 월 액 | 불 용 액 |             |
|                                     | 당 초   | 수 정   |                |            |                  |                |       |             |
| □ 미디어다양성<br>증진                      | 3,290 | 3,290 | -              | 3,290      | 3,290<br>[3,208] | -              | -     | 2,155       |
| ○ 시청점유율<br>기초조사                     | 853   | 853   | -              | 853        | 853<br>[811]     | -              | -     | 내역사업<br>통합  |
| ○ 시청점유율<br>조사                       | 918   | 918   | -              | 918        | 918<br>[892]     | -              | -     | 2,044       |
| ○ N스크린 <sup>52)</sup> 시청<br>기록 산출조사 | 1,361 | 1,361 | -              | 1,361      | 1,361<br>[1,358] | -              | -     | 내역사업<br>통합  |
| ○ 시청점유율<br>기초조사분석<br>및 검증 등         | 158   | 158   | -              | 158        | 158<br>[147]     | -              | -     | 111         |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나) 국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연구용역 추진 부적절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시청점유율 조사’는 시청점유율 제한  
규제 시행의 근거자료로 사용되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을 조사·산정하는 것으로, 해당 본조사에 앞서 시청행태 파악  
과 본조사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표본의 대표성 확  
보를 목적으로 하는 ‘시청점유율 기초조사’ 내역사업과 차이  
가 있음.

- 동 내역사업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KOBACO는 교부받은 보조금 9억 1,800만원 중 8억  
9,200만원(97.2%)을 실행하였음.

52) ‘N스크린’이란 하나의 콘텐츠를 N개의 기기에서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N스크린 시청기록 산출조사’는 스마트폰, PC, VOD 등을 통한 시청기록을 조사함으로써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를 반영한 통합시청점유율 조사를 진행하는 사업임.

- 동 내역사업과 관련하여 방미통위는 기금지출계획에 대한 국회 심사 시 반영되지 아니한 ‘통합시청점유율 개선 방안 연구’를 임의로 수행한 문제가 있음.
- 방미통위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당시 동 내역사업의 편성 근거 및 산출 내역으로 ‘고정형TV 실시간 시청점유율 조사(9억 300만원)’와 ‘미디어다양성 인식조사(1,500만원)’를 제시하였음.
- 그러나 2025회계연도 기금 지출 과정에서 동 사업의 필수 법정 사업인 ‘고정형TV 실시간 시청점유율 조사’ 내내역사업의 예산 중 1억 900만원을 ‘통합시청점유율 개선 방안 연구’에 활용하였음.

<‘시청점유율 조사’의 2025년도 예산 편성근거 및 집행내역>

| 세부<br>사업명   | 2025년도 예산 편성근거                                                | 2025년도 집행내역                                                     |
|-------------|---------------------------------------------------------------|-----------------------------------------------------------------|
| 시청점유율<br>조사 | ○ 918백만원                                                      | ○ 892백만원                                                        |
|             | - 고정형TV 실시간 시청점유율 조사 : <u>903백만원</u> (2,750가구 × 2.7만원 × 12개월) | - 고정형TV 실시간 시청점유율 조사 : <u>768백만원</u> (2,750가구 × 12개월 × 23,273원) |
|             |                                                               | - <u>통합시청점유율 개선 방안 연구</u> : <u>109백만원</u> (1식×109백만원)           |
|             | - 미디어다양성인식 조사 : 15백만원 (15백만원×1건)                              | - 미디어다양성 인식조사 : 15백만원 (1식×15백만원)                                |

자료: 방미통위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4.)

- 이에 대하여 방미통위는 2024년 미디어다양성위원회<sup>53)</sup>에서

다변화된 시청환경에서 법정 시청점유율 조사와 N스크린 조사를 포함한 정책방향 재설정 필요성이 논의됨에 따라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동 내역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한 것이라 설명하였음.

### <통합시청점유율 개선방안 연구의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 집행내역                    | 집행금액    |
|-------------------------|---------|
| 2025년 1~6월 조사 인건비       | 19,173  |
| 2025년 7~12월 조사 인건비      | 52,131  |
| 통합시청점유율 개선연구 원가산정 용역    | 440     |
| 통합시청점유율 개선연구 용역비        | 35,200  |
| 통합시청점유율 개선연구 중간평가 심사비   | 600     |
| 통합시청점유율 개선연구 최종심사비      | 600     |
| 통합시청점유율 개선방안 및 산정 관련 논의 | 922     |
| 합계                      | 109,066 |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7.)

○ 그러나, 동 사업의 ‘시청점유율 조사 분석 및 검증 등’ 내역사업에서 이미 통합시청점유율 관련 연구·분석<sup>54)</sup>을 수행하고 있어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융합정책

53) 「방송법」

제35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둔다.

③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9조의2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3.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54) 시청점유율 통합 검증연구(8,000만원), 미디어다양성 조사분석(6,700만원)

연구<sup>55)</sup>’ 사업을 통해서도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할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보임.

-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확정 이후 이러한 연구용역을 신설하여 진행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통제권을 사실상 회피하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55) 일반회계 3135-301

### (13) 언론중재위원회 지원(3132-309)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수당 이중 지급과 특정 부서에만 지급되는 수당 제도의 적절성 및 형평성을 검토하여 언론위 수당 제도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직무수당의 연례적 불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성과지표인 ‘피해구제율’이 외적 요인에 의존하여 기관 성과와 연계성이 저조한바, 기관의 실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감독기관과 예산 관리기관 간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하여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할 필요가 있음.

####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언론중재위원회 지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함)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라 함)가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의 심의 등 법정 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언중위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계획액 145억 4,500만원 전액이 언중위에 교부되었음.

## <2025회계연도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년  |        |                |            |        |                |       | 2026년<br>계획 |
|----------------------------------------|--------|--------|----------------|------------|--------|----------------|-------|-------------|
|                                        | 계 획 액  |        | 전 년 도<br>이 월 액 | 계 획<br>현 액 | 지 출 액  | 차 년 도<br>이 월 액 | 불 용 액 |             |
|                                        | 당 초    | 수 정    |                |            |        |                |       |             |
| <input type="checkbox"/> 언론중재위원회<br>지원 | 14,545 | 14,545 | -              | 14,545     | 14,545 | -              | -     | 14,819      |
| ○ 인건비                                  | 8,476  | 8,476  | -              | 8,476      | 8,476  | -              | -     | 8,773       |
| ○ 경상비                                  | 2,740  | 2,740  | -              | 2,740      | 2,740  | -              | -     | 2,703       |
| ○ 사업비                                  | 3,329  | 3,329  | -              | 3,329      | 3,329  | -              | -     | 3,343       |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언중위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고, 중재위원 중 임원으로 위원장(1명), 부위원장(2명), 감사(2명)를 호선했다.<sup>56)</sup>

- 언중위규칙에 따르면 18개 중재부<sup>57)</sup>가 각각 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중재위원 정원은 90명임.

5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③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각각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⑤ 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⑧ 감사는 중재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언론중재위원회 기본규칙」(중재위원회규칙)

제5조(임원) ① 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감사 2명을 둔다.

57) 서울 8개, 부산/대구/광주/대전/경기/강원/충북/전북/경남/제주 각 1개

나) 위원장 월정수당 이중지급 및 특정 부서 전용 수당제도 부적절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경상비’는 언중위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 2025년도 ‘경상비’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액 27억 4,000만원을 전액 교부받아 이 중 26억 7,400만원(97.6%)을 실집행하고, 6,600만원을 불용하였음.

○ 언중위는 중재위원회규칙 및 예규에 따라 ‘경상비’ 내역사업을 통해 임원(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에게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위원장은 300만원, 부위원장은 60만원, 감사는 30만원의 직책수당이 책정되어 있으며, 매월 정액으로 지급됨.

「중재위원 수당지급규칙」(중재위원회규칙)

제5조(직책수당 등)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책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및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예규」(중재위원회예규)

제17조(중재위원 수당 지급) ⑤ 「중재위원 수당지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책수당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

| 구 분   | 지급기준 | 지급액                               | 비 고 |
|-------|------|-----------------------------------|-----|
| 월정직책급 | 월 정액 | 위원장 300만원<br>부위원장 60만원<br>감사 30만원 |     |

자료: 언론중재위원회 (2026.7.)

○ 한편,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사업비’는 언론분쟁 관련 조정·중재 처리, 시정권고, 선거기사심의 등 법정업무와 언론피해 구제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등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2025년도 ‘사업비’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액 33억 2,900만원을 전액 교부받아 이 중 31억 1,800만원(93.7%)을 실집행하고, 2억 1,100만원을 불용하였음.

○ 언중위는 중재위원회내규에 따라 ‘사업비’ 내역사업을 통해 중재위원(위원장, 중재부장 및 그 외 중재위원)에게 위원직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위원장은 150만원(2025년까지는 250만원)<sup>58)</sup>, 중재부장은 70만원, 그 외 중재위원은 50만원의 위원직무수당이 책정되어 있으며, 이 또한 매월 정액으로 지급됨.

「중재위원 수당지급규칙」(중재위원회규칙)

제3조(수당의 종류) 중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수당 : 위원총회, 운영위원회, 시정권고소위원회 및 위원업무회의 등에 참석한 중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2. 심리수당 : 조정 및 중재 신청 사건의 각 심리 기일에 참석한 중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58) 2025년까지 250만원이었으나, 2026년부터 150만원으로 감액되었음.

3. 감사수당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회계감사 시에 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4. 위원직무수당 : 중재위원의 안건검토 및 자료조사 활동을 위해 월별 정액으로 위원장, 중재부장 및 중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5. 시정권고소위원장 직무활동비 : 시정권고소위원회 위원장의 직무활동을 위해 월별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

**제3조의2(위원직무수당의 지급시기 및 지급액)** ② 제3조에 따른 위원직무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직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별표]** 위원직무수당 지급액

| 구 분    | 대 상  | 지 급 액 | 비 고 |
|--------|------|-------|-----|
| 위원직무수당 | 위원장  | 150만원 | 월정액 |
|        | 중재부장 | 70만원  |     |
|        | 중재위원 | 50만원  |     |

자료: 언론중재위원회 (2026.7.)

- 이를 정리하면, 언중위 중재위원의 직책별로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와 금액은 다음과 같음.

### < 언중위 중재위원회에 대한 수당 운영 현황 >

| 수당명  | 지급<br>방식  | 중 재 위 원             |      |      |      |             |
|------|-----------|---------------------|------|------|------|-------------|
|      |           | 임 원                 |      |      | 중재부장 | 그 외<br>중재위원 |
|      |           | 위원장                 | 부위원장 | 감사   |      |             |
| 직책수당 | 매월        | 300만원               | 60만원 | 30만원 | -    | -           |
| 직무수당 | 매월        | 1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70만원 | 50만원        |
| 회의수당 | 회의<br>1회당 | 10만원 (5만원 추가 지급 가능) |      |      |      |             |
| 심리수당 | 심리<br>1회당 | 10만원 (5만원 추가 지급 가능) |      |      |      |             |
| 감사수당 | 감사<br>건당  | -                   | -    | 10만원 | -    | -           |

\*2025년까지 250만원이었으나, 2026년부터 150만원으로 감액되었음.

○ 수당 제도를 살펴보면, 언중위는 위원장에게 월 300만원의 직책수당을 지급함과 동시에, 중재 업무 수행을 이유로 월 250만원의 직무수당까지 월정수당을 이중 지급한 문제가 있음.

- 위원장의 본질적 직무가 중재 업무 총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명예직·비상임<sup>59)</sup>인 위원장에게 사실상 고정적 급여를 두 사업으로 분리하여 수당 형태로 편법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해당함.

○ 한편, 지난 2025년 방통위가 실시한 언중위 회계감사 결과 언중위 위원장의 위원직무수당이 중재부장·중재위원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으로 2026년 예산부터 해당 금액을 2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감액한 바 있으나, 이후 직무수당으로서 신설된 ‘시정권고소위원장 직무활동비’가 위원장에게 지급되고 있음.

-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제32조에 따라 언론사에 대한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심사를 위한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언중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됨.<sup>60)</sup>

---

5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⑩ 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서 생략)

6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권고) ①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시정권고 소위원회)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 소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 시정권고소위원장 직무활동비는 시정권고소위원회 위원장에게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수당으로, 언중위 위원장이 시정권고소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한다는 점<sup>61)</sup>에서 이 또한 사실상 언중위 위원장의 월정수당으로 운영되고 있음.

#### < 2025회계연도 언중위 위원장 월정수당 지급 현황 >

| 수당명      | 집행금액 (원)   | 수령인 | 집행일자        |
|----------|------------|-----|-------------|
| 위원장 직무수당 | 2,500,000  | 최◇◇ | 2025.12.23. |
| 위원장 직책수당 | 2,798,100  | 김▲▲ | 2025.2.3.   |
|          | 2,798,100  | 김▲▲ | 2025.2.28.  |
|          | 2,798,100  | 김▲▲ | 2025.4.1.   |
|          | 2,798,100  | 김▲▲ | 2025.5.2.   |
|          | 2,798,100  | 김▲▲ | 2025.6.2.   |
|          | 2,798,100  | 김▲▲ | 2025.7.1.   |
|          | 2,798,100  | 김▲▲ | 2025.8.1.   |
|          | 2,798,100  | 김▲▲ | 2025.9.1.   |
|          | 2,798,100  | 김▲▲ | 2025.10.1.  |
|          | 2,798,100  | 김▲▲ | 2025.11.3.  |
|          | 1,467,810  | 김▲▲ | 2025.12.1.  |
|          | 2,798,810  | 최◇◇ | 2025.12.12. |
| 합 계      | 34,747,620 | -   | -           |

주1: 2024.8. 제17대 위원장(이☆☆) 임기 만료 후 2025.12. 18대 위원장(최◇◇) 취임 전까지 직책수당은 위원장 직무대행(김▲▲)이 수령하였고, 직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25.12.부터는 모두 18대 위원장이 수령 중임

주2: 2026년부터 위원장에 대한 위원직무수당이 2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감액되고, 시정권고소위원장 직무활동비(월 100만원)가 신설됨.

자료: 언론중재위원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7.)

61) 「언론중재위원회 기본규칙」(중재위원회규칙)

제6조(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총회, 운영위원회 및 시정권고소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단,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임원 또는 다른 위원에게 위원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 언중위에 대한 회계감사 이후 직무수당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책수당은 여전히 위원장(300만원)이  
부위원장(60만원)·감사(30만원)에 비해 5~10배로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시정권고소위원장 직무활동비(100만원) 신설을 통해 매월  
총 550만원 상당의 수당 중복 수령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참고로, ①방발기금으로 지원받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는 위원장(상임)<sup>62)</sup> 월정직책급이 150만원으로 언중위의 절반  
에 불과하고, 비상임위원에게는 월정직책급 없이 안전검토비  
(회당 20~30만원)와 회의참석수당(회당 10만원)만 지급하고 있으며,  
②분쟁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비상  
임)<sup>63)</sup>,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비상임)<sup>64)</sup>은 월정수당 없

---

6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② 심의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  
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

제29조(예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6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조정  
위원으로 구성하고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 작성 등을 위하여 상  
임 조정위원을 둘 수 있다.

64) 「방송법」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 주된 대상이 저작권에 관련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다.

1. 방송사업자

7.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방송법 시행령」

제21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

이 회의참석·조정수당(회당 15~30만원)만 수령하고, 콘텐츠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장(비상임)<sup>65)</sup>은 매월 업무수당을 수령하나, 그 규모가 월 100만원에 그침.

-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의 월정액 또는 회의참석수당 등을 포함한 수당의 상한이 연 3,000만원이라는 점<sup>66)</sup>에 비추어 볼 때도 비상임인 언중위 위원장의 월정수당이 월 550만원인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이러한 수당 체계의 불합리성은 언중위 위원장뿐만 아니라 언중위 사무처 직원에 대한 수당 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원회에 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이하 “방송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65)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콘텐츠사업자 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르며, 방송통신과 관련된 분쟁 중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분쟁조정의 대상(같은 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외주제작사가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각각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66)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

**제5조(비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의 수당)** 비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의 수당은 월정액 또는 회의참석수당 등을 포함하여 연 30백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의 경우 수당 전액을 월정액만으로 지급할 수 없다.

- 언중위 예규에 따르면 중재·조정 및 조사 등 기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아닌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진 부서 소속 직원(3명)에게만 월 20~30만원의 특수업무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예규」(중재위원회예규)                                     |      |                |     |
|-------------------------------------------------------------------|------|----------------|-----|
| 제19조(예산편성활동비 지급) 예산의 편성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는 아래와 같이 예산편성활동비를 지급한다. |      |                |     |
| 구 분                                                               | 지급기준 | 지급액            | 비 고 |
| 예산편성<br>활동비                                                       | 월 정액 | 예산편성담당 인당 30만원 |     |
|                                                                   |      | 예산편성보조 인당 20만원 |     |

자료: 언론중재위원회 (2026.7.)

- 이에 대하여 언중위는 종전 타 부서에도 특정업무경비가 지급되었으나, 예산 축소에 따라 순차적으로 폐지된 결과 예산편성팀에 대한 활동비만 남은 상태라고 설명함.
- 그러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인바,<sup>67)</sup> 예산 감액 과정에서 기관 본연의 현장·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수당을 우선 삭감하고,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진 부서의 수당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타 부서와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음.

67)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83p

- 따라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수당 이중 지급과 특정 부서에만 지급되는 수당 제도의 적절성 및 형평성을 검토하여 언론위 수당 제도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다) 중재위원 결격사유 확대를 통한 중립성 강화 필요

○ 언중위가 언론사등의 보도에 따른 분쟁(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 등)이 있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직권 조정결정’,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중재’와 ‘시정권고’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sup>68)</sup>에서 개별 중재위원에게는 특정 언론사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높은 수준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됨.

○ 그러나 「언론중재법」은 전직 언론사 대표자·임직원 등에 대하여 아무런 결격사유를 두고 있지 아니한바, 퇴직 직후 중재위원으로 위촉되어 이해충돌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언론중재법」 제8조<sup>69)</sup>는 중재위원의 결격사유로 공무원, 정

6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등) ①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2조(시정권고) ①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6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① 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과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4.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③ 중재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직(職)에서 해촉(解囑)된다.

당의 당원, 공직선거 후보자 등과 함께, ‘현직’ 언론사 대표자 및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을 뿐임.

- 이와 달리, 언중위와 유사한 심의·규제기관인 ‘방미통위’와 ‘방미심위’<sup>70)</sup>, ‘게임물관리위원회’<sup>71)</sup> 등은 특정 사업자와의 이해관계 차단을 위해 현직뿐만 아니라 ‘최근 3년 이내 방송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게임관련업체의 임원으로 종사했던 사람’까지 위원 결격사유로 명시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7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제20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3.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결격사유) 법 제10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2조제2호·제5호·제8호·제11호 및 제13호에 따른 방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임원(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및 그 밖에 사업집행을 책임지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하는 임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임원

7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①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이 제38조제7항의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⑦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게임물관리위원회규정)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2. 임원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따라서 언론위의 공정한 업무 수행과 중립성 강화를 위하여, 언론사로부터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중재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방안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sup>72)</sup>

---

72) 다만, 중재위원 결격사유 확대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언론중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바, 문체부 협조 없이 방미통위 차원의 시정은 어려운 것으로 보임.

## 라) 임기제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위원직무수당 연례적 불용

- 상술한 것과 같이, 동 사업의 ‘사업비’ 내역사업을 통해 모든 중재위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위원직무수당’이 지급됨.
- 언중위는 90명의 중재위원 전원이 연중 상시 임기를 채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매년 6억 720만원<sup>73)</sup>의 위원직무수당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중재위원의 공석이 수시로 발생하여 직무수당이 불용되는 문제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최근 3년간 집행률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3년간(2023~2025년) 언중위 위원직무수당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연 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예산액 (A)    | 607.2 | 607.2 | 607.2 |
| 실집행액 (B)   | 571   | 534   | 478   |
| 실집행률 (B/A) | 94.0  | 87.9  | 78.7  |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따라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원직무수당의 연례적 불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재위원 현원과 후임자 추천·위촉에 필요한 절차 및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73) ①위원장 1인 X 250만원 X 12개월=30백만원, ②중재부장 18인 X 70만원 X 12개월=151.2백만원,  
③중재위원 71인 X 50만원 X 12개월=426백만원 → 총 607.2백만원

○ 다만, 언중위 위원 임기제의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위원 공석 및 직무수당 불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불가피한 사유도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재위원 결원이 발생한 후 후임자 위촉이 지연될 경우, 관련 예산이 불용될 뿐 아니라 중재부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조정·중재사건 처리가 불가능해지고, 대규모 결원 발생 시에는 운영위원회, 시정권고소위원회 등 언중위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도 중단될 수 있음.

- 참고로, 2025년 기간별 중재위원 현원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중재위원 전원(90명)이 직무를 수행한 기간은 1년 중 5일에 불과함.

< 2025년 중재위원 현원 현황 (정원 90명) >

| 기 간               | 현원 (명) | 충원률 (%) |
|-------------------|--------|---------|
| 1. 1. ~ 1. 8.     | 66     | 73.3    |
| 1. 9. ~ 2. 9.     | 65     | 72.2    |
| 2. 10. ~ 2. 16.   | 58     | 64.4    |
| 2. 17. ~ 2. 20.   | 67     | 74.4    |
| 2. 21. ~ 2. 23.   | 66     | 73.3    |
| 2. 24. ~ 2. 28.   | 65     | 72.2    |
| 3. 1. ~ 3. 30.    | 63     | 70.0    |
| 3. 31. ~ 5. 31.   | 73     | 81.1    |
| 6. 1. ~ 11. 16.   | 72     | 80.0    |
| 11. 17. ~ 11. 21. | 90     | 100.0   |
| 11. 22. ~ 12. 31. | 89     | 98.9    |

자료: 언론중재위원회 (2026.7.)

- 이처럼 결원이 자주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임기 중 결원 발생 시 후임자 위촉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임.
- 회의체 운영의 안정성·연속성을 확보하고 수당 불용으로 인한 예산 집행상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후임자 위촉 지연 시 전임자가 후임자 위촉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타 기관(국가인권위원회<sup>74)</sup>,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sup>75)</sup>, 영상물등급위원회<sup>76)</sup>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제도적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7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⑧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7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임기) ⑤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76)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76조(위원의 임기) 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 마) 기관 성과와 성과지표 간 연계성 저조

- 동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인 ‘언론분쟁 피해구제율’은 조정 청구 건수 대비 조정을 통한 국민의 피해구제 건수를 계산한 것으로, 2025년 실적은 70.5%였음.

| 성과지표                 |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측정산식<br>(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br>(또는 자료출처)            |
|----------------------|-----|------|-------|-------|-------|-------|----------------------------------------------------------------------------------|--------------------------------|
| 언론분쟁<br>피해구제율<br>(%) | 목표  | 신규   | 63.5  | 64.0  | 64.5  | 65.0  |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취하(구제)+그 외<br>피해구제 건} /<br>{전체조정청구건수-<br>(계속+기각+각하+계류)}<br>×100 | 언론조정신청<br>처리현황<br>(자체<br>통계자료) |
|                      | 실적  | -    | 67.8  | 73.9  | 72.0  | 70.5  |                                                                                  |                                |
|                      | 달성도 | -    | 106.8 | 115.5 | 111.6 | 108.5 |                                                                                  |                                |

- 그러나 동 지표는 기관의 실질적 노력보다 외적 요인에 좌우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첫째, 동 지표는 조정의 성격과 분쟁 당사자의 합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언중위(중재부·중재위원·사무처)의 실질적인 성과나 노력에 반드시 연동된다고 보기 어려움.
  - 당사자 의사에 반해 합의를 성사시킬 수는 없는 조정제도의 특성상, 피해구제율 수치가 높다는 것을 근거로 언중위의 성과가 우수하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둘째, 특정 언론보도에 대하여 특정인·단체 등으로부터 동일하

거나 유사한 조정청구가 집단으로 접수될 경우 해당 조정 결과에 따라 전체 성과지표의 수치가 왜곡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실제로 2014년 전체 접수사건(19,048건) 중 단 2인이 신청한 사건이 85%(16,117건)을 차지하여 당해연도 피해구제율 지표가 사실상 해당 신청인들의 합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피해구제율 지표의 목표 달성만을 요구할 경우,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통한 당사자 이익 도출이라는 조정제도 본연의 취지보다 수치 개선을 목표로 중재·조정 결과가 왜곡되는 ‘목표 대치(Goal Displacement)’ 현상을 초래할 수 있음.

○ 셋째, 동 지표를 따를 경우 「언론중재법」에 따른 신속한 피해구제 원칙과 조정의 법정 기한(14일)<sup>77)</sup>에 관한 사항을 평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

---

7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제19조(조정) ②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 동 지표는 단순히 조정성립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로 종결된 사건의 비율만을 나타낼 뿐, 접수된 사건의 처리 기한 준수 여부나 평균 처리 기한 등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할 때, 접수 건수 대비 처리율<sup>78)</sup> 또는 기한 내 조정 처리율 등 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면서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표로의 변경이 타당하다고 보임.
- 따라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성과지표인 ‘언론분쟁 피해구제율’이 분쟁 당사자 의사 등 외적 요인에 의존하여 기관의 실제 성과와 연계성이 저조한바, 기관의 실제 노력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78) 참고로, 대법원은 전체 접수사건 대비 처리사건 수인 ‘전체사건처리율’을, 헌법재판소는 접수사건 대비 처리사건 수인 ‘심판사건처리율’을, 공정거래조정원은 접수사건 대비 처리사건 수인 ‘공정거래 분쟁조정사건 처리율’을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음.

## 바) 예산 지원기관과 사업 감독기관의 불일치 문제

- 2000년 「방송법」 제정<sup>79)</sup>으로 방송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방송 업무가 문화관광부에서 방송위원회로 이관되었고, 언중위 운영 재원인 방송발전기금(現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설치되며 재원 관리 기관도 공보처에서 방송위원회로 변경되었으나, 언중위 관리·감독기관은 문화관광부(現 문화체육관광부)로 유지되면서 예산 지원과 사업 감독 기관이 불일치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 < 언론중재위원회 재원 관리기관 및 사업 감독기관 연혁 >

| 연도      | ~ '00년 | '01~'07년 | '08~'10년 | '11~'25년 | '25년~ |
|---------|--------|----------|----------|----------|-------|
| 재원      | 공보자금   | 방송발전기금   |          | 방송통신발전기금 |       |
| 재원 관리기관 | 공보처    | 방송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          | 방미통위  |
| 사업 감독기관 |        | 문화관광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 언중위의 예산 지원기관(방미통위)과 사업 감독기관(문체부) 간 불일치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첫째, 예산 지원·심사 체계와 사업 감독 체계가 이원화되어 기관 관리 체계의 비효율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언중위의 인건비·경상비·사업비 등 운영 예산 전액은 「언론중재법」 제12조<sup>80)</sup>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이라

79) 법률 제6139호, 2000.3.13.시행

함)에서 지원되며,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관리·운영<sup>81)</sup>하고 있음.

○ 다만, 언중위는 문체부 소관 기관<sup>82)</sup>으로서, 「언론중재법」 제11조의2<sup>83)</sup>에 따라 매년 활동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는 경우 언중위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주무상임위원회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사업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정기 업무 보고를 실시하고, 국정감사 또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언중위 사업 예산 심사는 방미통위 및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로부터 받고, 사업 수행 및 조직 관리는 문체부 및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로부터 받는

---

8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 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財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8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관리·운용한다.

8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③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후단 및 각 호 생략)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의2(문화미디어산업실) ①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⑭ 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지역신문발전위원회·뉴스통신진흥회·언론중재위원회 및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관련된 업무

8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중재위원회의 활동 보고) 중재위원회는 매년 그 활동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인해 비효율이 초래되는 측면이 있음.

-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권한을 가지는 방미통위와 심사 권한을 가지는 국회 과방위는 기금 지원의 타당성 및 기금 투입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며, 예산 불용 문제와 관련된 중재위원 임기제 등 제도개선이나 사업의 법적 근거 보완 등이 필요하다더라도 「언론중재법」 또는 하위 법령의 개정 권한이 없어 주도적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구조임.
- 언중위 사업과 행정 전반을 소관하는 문체부 및 국회 문체위 또한 사업 관리·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 소요를 기금 계획안에 직접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둘째, 「언론중재법」 제12조에 따라 언중위 운영 예산을 방발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언중위의 성격을 고려할 때 예산 지원이 방발기금의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방발기금의 용도 중 언중위 지원의 근거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 증진 사업’이라고 보임.

○ 다만, 최근 3년간 현황을 살펴보면, 언중위에 조정이 접수된 언론등<sup>84)</sup>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 중 인터넷신문 관련 청구가 63.1%를 차지하는 반면, 방발기금의 주 목적인 방송통신과 관련된 분야는 8.2%로 미미한 수준이며, 최근 3년간 총 3,149건의 시정권고를 행하였으나 이 중 방송매체에 대한 것은 1건도 없었음.

#### <최근 3년간(2023~2025년) 매체별 조정사건 청구 현황>

(단위: 건, %)

| 연 도<br>매 체 | 2023년 | 2024년 | 2025년 | 합계 (비율)        |
|------------|-------|-------|-------|----------------|
| 신문         | 487   | 376   | 311   | 1,174 (9.7)    |
| 방송         | 345   | 317   | 331   | 993 (8.2)      |
| 잡지         | 8     | 10    | 6     | 24 (0.2)       |
| 뉴스통신       | 218   | 176   | 242   | 636 (5.3)      |
| 인터넷신문      | 2,491 | 2,537 | 2,579 | 7,607 (63.1)   |
| 인터넷뉴스서비스   | 498   | 473   | 451   | 1,422 (11.8)   |
| 기타         | 38    | 48    | 106   | 192 (1.6)      |
| 계          | 4,085 | 3,937 | 4,026 | 12,048 (100.0) |

자료: 2025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연차보고서, 26-27p

○ 그럼에도 최근 3년간 방발기금을 통한 언중위 예산 규모는 415억원이며, 2000년 이후 방송발전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지원된 금액은 총 2,456억원에 달하는데, 지상파방송사,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시장의 수익성 악화로 방발기금 수입이 급격

84) 언론(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히 줄어들었다는 점<sup>85)</sup>에서 방발기금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한바, 방발기금 설치·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동 사업을 타 기금이나 문체부 소관 일반회계 등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셋째, 국회의 지적 및 시정요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에도 소관 불일치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소관 불일치 문제가 다음과 같이 국회에서 수차례 지적되어왔음.

#### <최근 10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소관 불일치 관련 국회 시정요구 등 현황>

| 구분                | 국회 지적사항                                                                                                                                                                                                                                   | 종류    |
|-------------------|-------------------------------------------------------------------------------------------------------------------------------------------------------------------------------------------------------------------------------------------|-------|
| 2024회계연도 결산 (문체부) | ○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중재위원회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등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할 것                                                                                                                                                                        | 제도 개선 |
| 2022회계연도 결산 (방통위) | ○ 언론중재위원회와 국제방송교류재단 및 국악방송은 그 소관 기관(문화체육관광부)과 예산 지원기관(방송통신위원회)이 일치하지 않아 사업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 국악방송 및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예산 편성·집행 및 성과관리 과정에서 보다 책임있는 관리·감독을 담보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예산지원기관의 일원화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부대의견  |
| 2021회계연도 결산 (방통위) | ○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소관기관과 예산지원기관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관련 예산에 관해 협의할 것                                                                                                                               | 제도 개선 |
| 2019회계연도 결산 (방통위) | ○ 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기관과 예산지원기관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중재위원회의 재원에 관한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관련 예산에 관해 협의할 것                                                                                                         | 제도 개선 |

85) (2023년) 1조 1,687억원 → (2024년) 9,786억원 → (2025년) 8,180억원

| 구분                   | 국회 지적사항                                                                                                                                                         | 종류       |
|----------------------|-----------------------------------------------------------------------------------------------------------------------------------------------------------------|----------|
| 2017회계연도<br>결산 (방통위) | ○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제방송교류재단과 언론중재위원회의 감독기관과 예산 지원기관을 일치시킬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                                                                                    | 제도<br>개선 |
| 2026년도<br>예산안 (방미통위) |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편성된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사업의 예산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부대<br>의견 |
| 2023년도<br>예산안 (방통위)  | ○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리랑 국제방송 지원’과 ‘국악방송 지원’,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지원기관과 감독기관의 불일치 문제가 있으므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로 이관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한다.          | 부대<br>의견 |
| 2018년도<br>예산안 (방통위)  | ○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리랑 국제방송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소관 기관과 예산 지원기관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 부대<br>의견 |
| 2017년도<br>예산안 (방통위)  |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소관 기관과 예산지원기관 불일치 해소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26)이 심사 중인 점을 고려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인건비와 경상비 85억 9,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다는 뜻은 명확히 한다. | 부대<br>의견 |

○ 유사 사례로, ‘아리랑국제방송지원’과 ‘국악방송 지원’사업에 대하여도 소관 불일치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왔는데, 2023회계연도 및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정이 요구되었고,<sup>86)</sup> 해당 사업들은 2026년도 예산안부터 문체부 소관 일반회계로 이관되어 소관이 문체부로 일원화되었음.

86)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5): 기금사업 지원기관과 감독기관 불일치 문제 해소 필요 (시정)

|        |                                                                                                                                                                                 |
|--------|---------------------------------------------------------------------------------------------------------------------------------------------------------------------------------|
| 관련사업명  | 방송통신발전기금 - 아리랑국제방송지원(3131-302), 국악방송 지원(3131-304)                                                                                                                               |
| 지적사항   |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수입이 16.3% 감소하였음에도 지난해 192억 7,200만원을 국제방송 및 국악방송에 지원하였음.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으로 감사가 불가능한데, 매년 예산만 지원하고 있음.<br>- 이에 대해서는 작년에 문체부에서도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증액안을 수용한 바 있음. |
| 시정요구사항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예산 지원기관과 감독기관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 (시정)                                                                                                      |

○ 구체적 방안으로서 언중위 재원을 방발기금에서 문체부 소관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하려는 「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sup>87)</sup>의 심사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다만, 문체부는 「언론중재법」 제12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방발기금을 재원으로 유지하길 희망하는 입장이며, 기획예산처는 문체부가 언중위 예산을 편성하기에 적절한 기금을 관리하고 있지 않고, 기금 지원 사업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은 국고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 방발기금의 고갈이 현실화되고 있고, 언중위 소관 불일치 문제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만큼,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따라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언중위의 관리·감독기관과 예산 관리기관 간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하여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할 필요가 있음.

---

87) 의안번호 제2218957호, 최형두의원 대표발의(2026.5.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를 담당하는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서 미디어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언론사의 보도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준사법기관의 재원을 특정 영역 사업자들이 조성한 법적 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더욱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정·중재 청구건수 중 대다수가 인터넷 신문의 보도에 관한 사건인 반면, 방송 보도와 관련된 분쟁사건은 10% 안팎에 불과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부합되지 않는 실정임. 아울러 언론중재위원회의 행정감독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인 반면 예산지원기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발생과 이중심사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가 여러 차례 국회에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정감독기관과 예산지원기관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각 기금이 법에서 정한 고유의 용도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               |
|---------------|
| 문 의 처         |
| 02) 6788-5226 |
| 02) 6788-5228 |